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Audit Committee and Corporate Governance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2021년 3분기 · Vol.15



삼일회계법인

Contents

1. 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2021 법규 동향	01
2. 202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
3. Audit Committee Excellence Series: 감사위원회를 위한 체크리스트	32
4. 데이터로 보는 2020년 핵심감사사항	42
5. Audit Committee Library 소개	51



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2021 법규 동향



본고는 지난 6월 삼일회계법인이 발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2021 Volume 2.0』 내용의 일부와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동향을 소개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2021 Volume 2.0』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 Publications:
www.pwc.com/kr/ko/publications/research-paper/discovery-of-ksox-excellence.html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분석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
- (2) 외부자문(Outsourcing)
- (3) 감사(위원회) 평가
- (4) 재무결산 업무

2. 주요 통제활동 미비점 현황 분석

- (1) 미비점 발생 요약
- (2) 미비점 유형 분석

3. 외부감사인과 주요 논의 이슈

- (1) 주요 논의 항목 요약
- (2) 세부 논의 내용

4.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동향

-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
-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 1.~3.의 분석 대상 회사는 다음과 같다.

구분	5천억~2조원 미만	2조~5조원 미만	5조~10조원 미만	10조원 이상	계
제조	24	9	9	11	53
금융/보험	-	2	4	7	13
기타	22	6	6	2	36
계	46	17	19	20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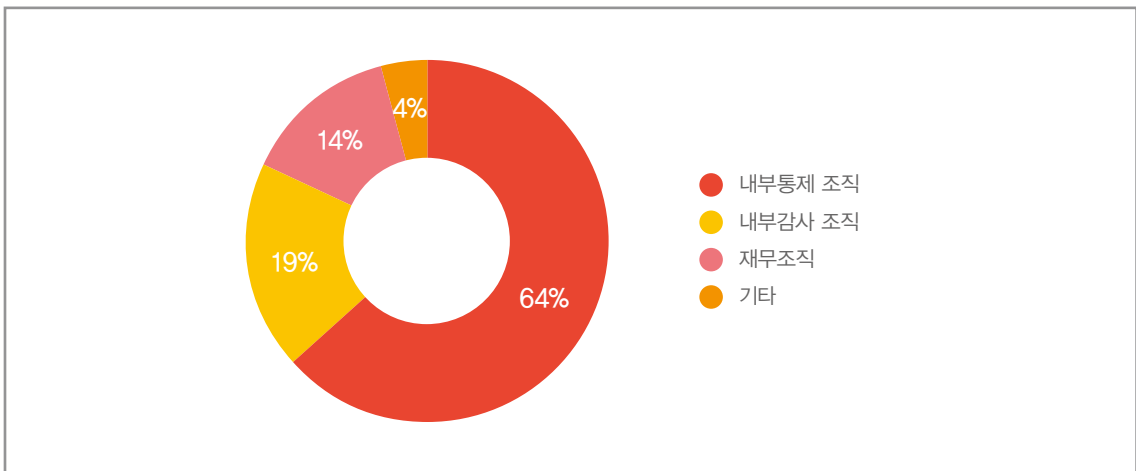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분석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 유형

분석대상 회사는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또는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내 기능 구분은 '내부통제 조직' 64%, '내부감사 조직' 19%, '재무 조직' 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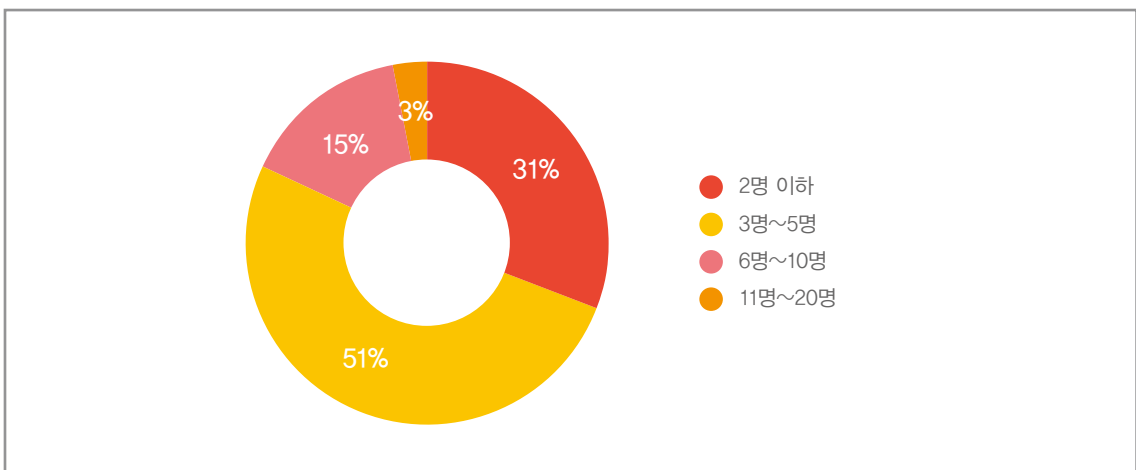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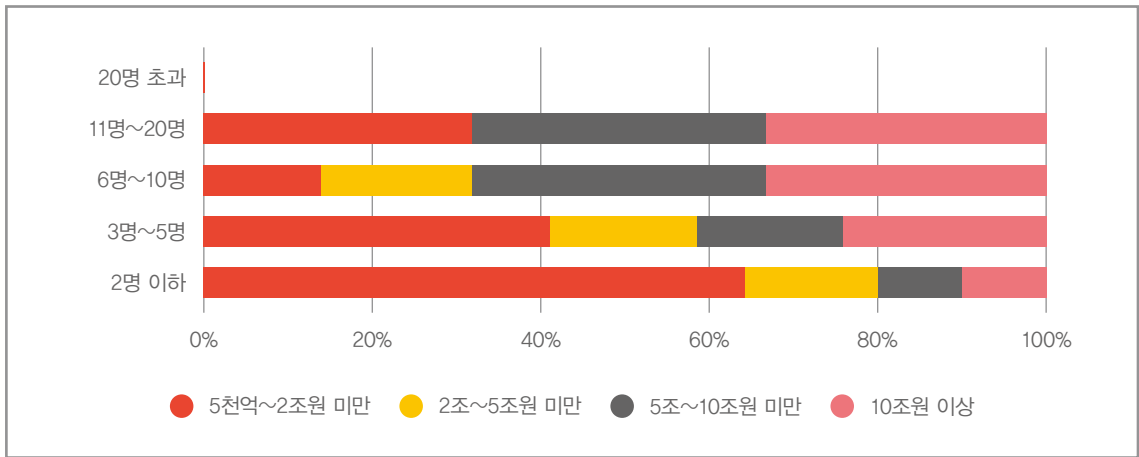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 규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 규모는 '3명에서 5명 이하' 51%, '2명 이하'가 31%로 분석 대상회사의 82%가 '5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산 규모 5천억 이상 2조 미만 회사의 경우 '2명 이하'의 조직 규모가 46%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 규모



자산 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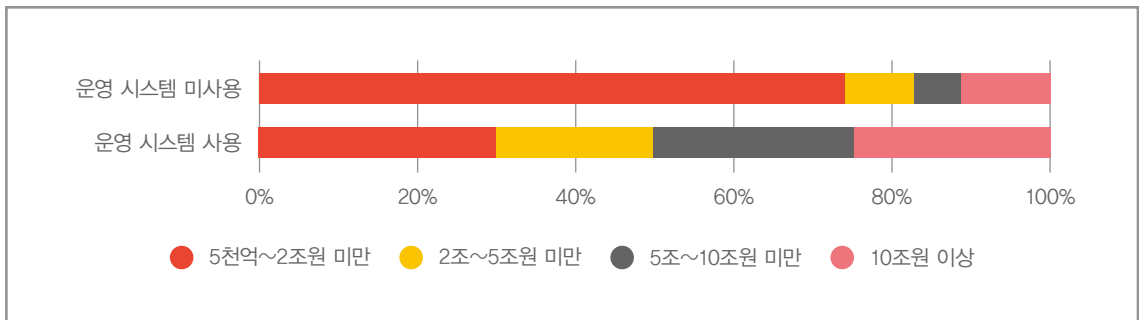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수행 방법

분석대상 회사의 64%가 테스트 표본 수를 중간평가일자 이전과 이후 기간에 배분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36%는 중간평가일자 기준 결론을 형성하고 잔여기간테스트(Roll-forward test)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시스템 사용 여부

분석대상 회사의 69%가 운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규모 5천억 이상 2조 미만 회사 비율이 높아 자산 규모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자산 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시스템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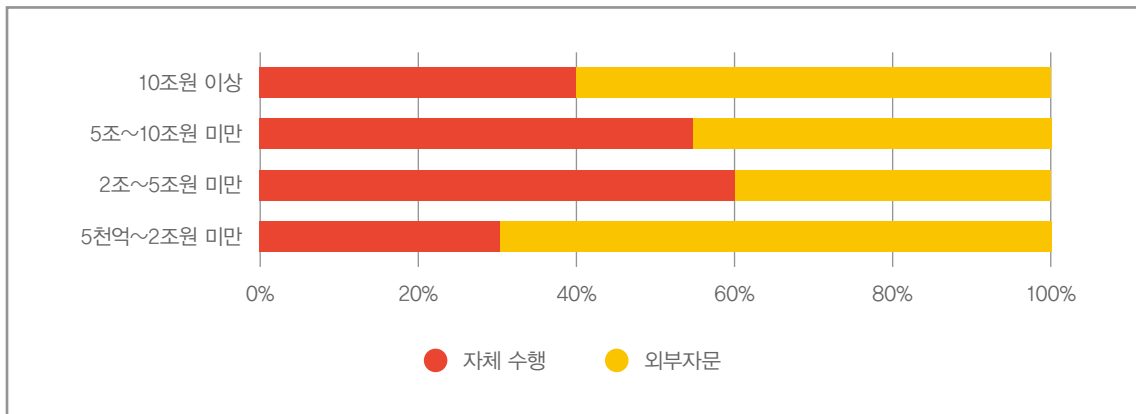


(2) 외부자문(Outsourcing)

① 외부자문(Outsourcing) 활용

분석대상 회사의 58%가 외부자문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 5천억 이상 2조 미만 회사의 경우 더 높은 비율로 69%가 외부자문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모두에 대한 자문사 활용은 71%, '설계평가'에 대한 자문사 활용은 25%, '운영평가'에 대한 자문사 활용은 3%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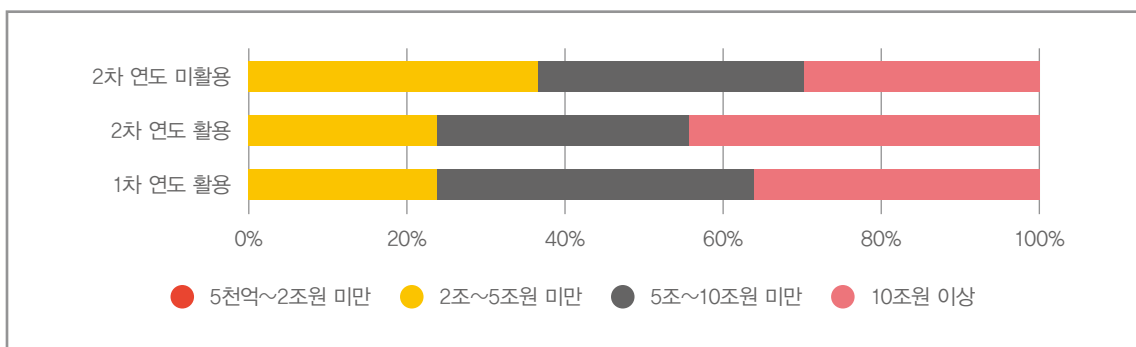
자산 규모별 외부자문(Outsourcing)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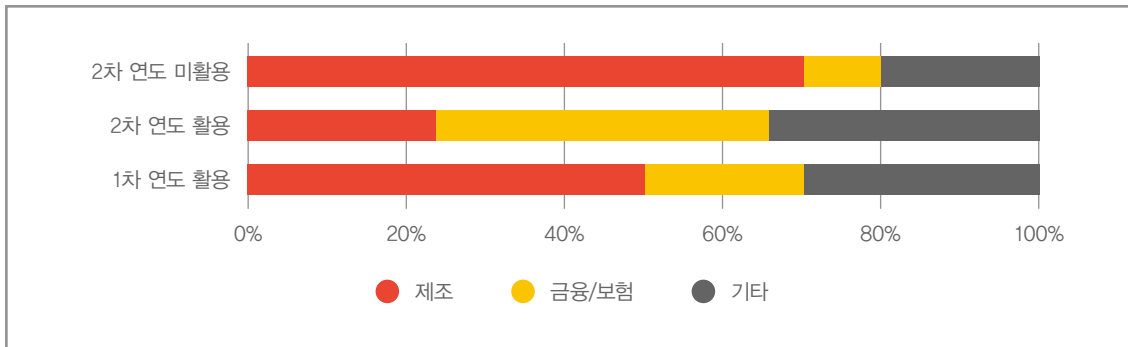
② 외부자문(Outsourcing) 활용 추이(감사 2년차 이상)

감사 2년차 분석대상 회사의 61%가 1차 연도에 외부자문을 활용하였으며, 2차 연도에는 45%가 외부자문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 규모별 외부자문(Outsourcing) 활용 추이



산업 구분별 외부자문(Outsourcing) 활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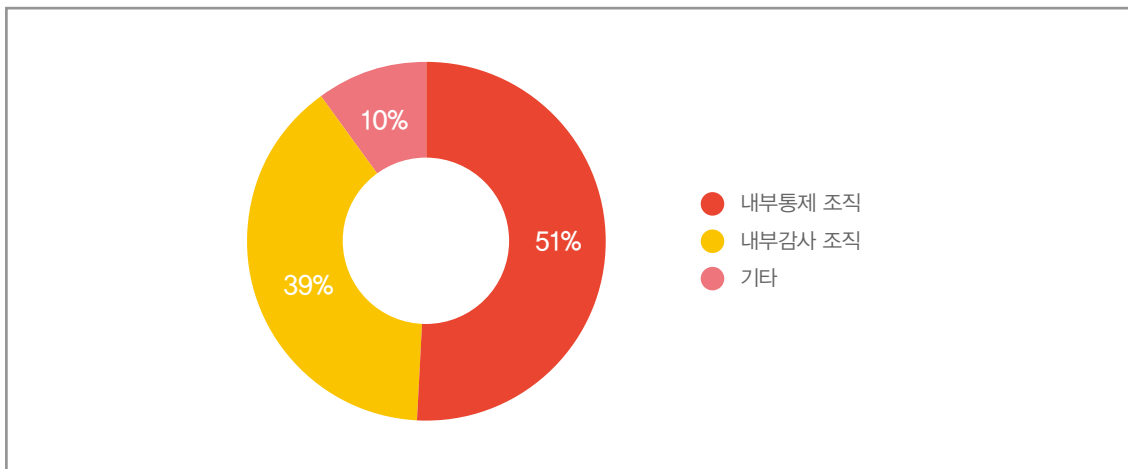


(3) 감사(위원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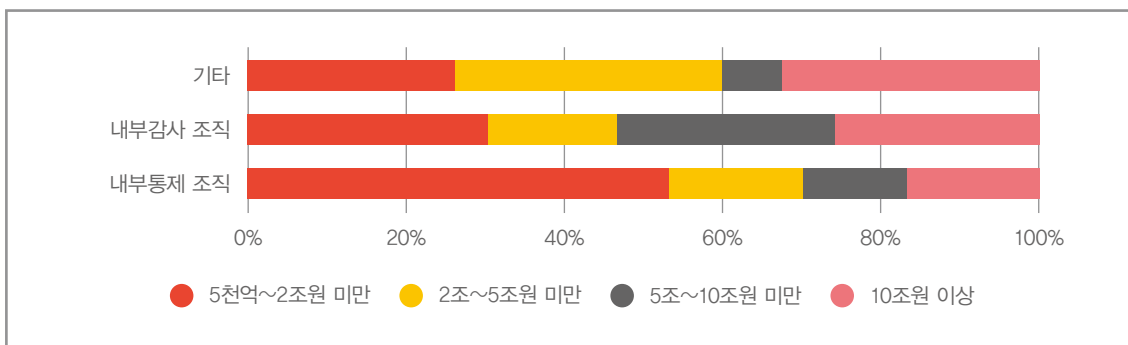
① 감사(위원회) 평가 지원 조직 유형

분석대상 회사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평가 지원 조직(또는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내 기능 구분으로는 '내부통제 조직' 51%, '내부감사 조직' 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평가 지원 조직 기능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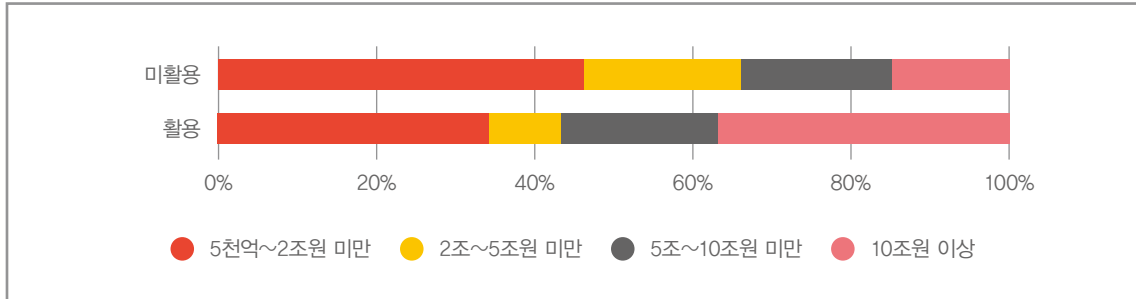
자산 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평가 지원 조직 기능 구분



② 감사(위원회) 평가 외부자문사 활용 여부

분석대상 회사의 21%가 감사(위원회) 평가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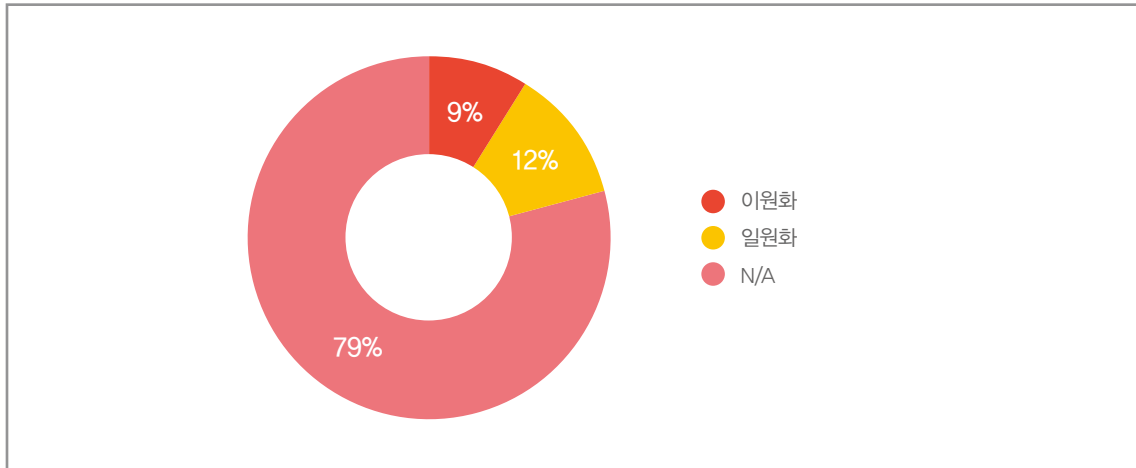
자산 규모별 감사(위원회)평가 외부자문사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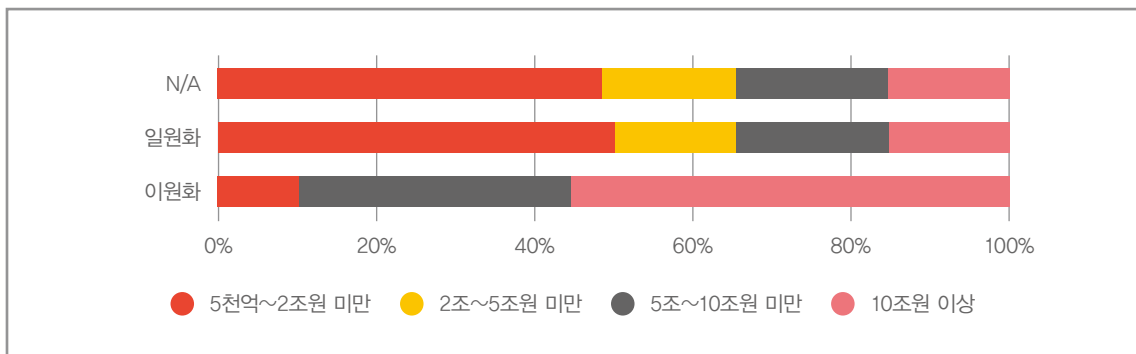
③ 내부회계 PA(Private Accountant) 자문사와 감사(위원회) 평가 자문사 이원화 여부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문사를 이원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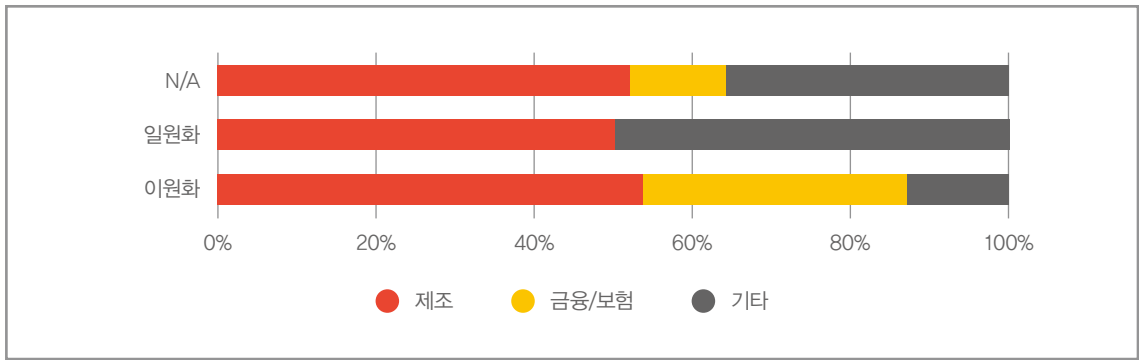
내부회계 PA 자문사와 감사(위원회)평가 자문사 이원화 여부



자산 규모별 내부회계 PA 자문사와 감사(위원회)평가 자문사 이원화 여부



산업 구분별 내부회계 PA 자문사와 감사(위원회)평가 자문사 이원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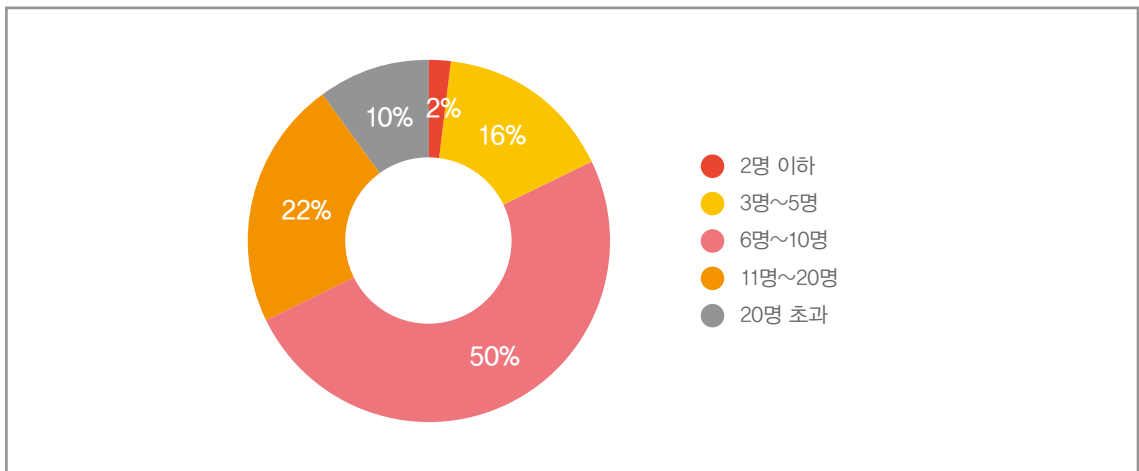


(4) 재무결산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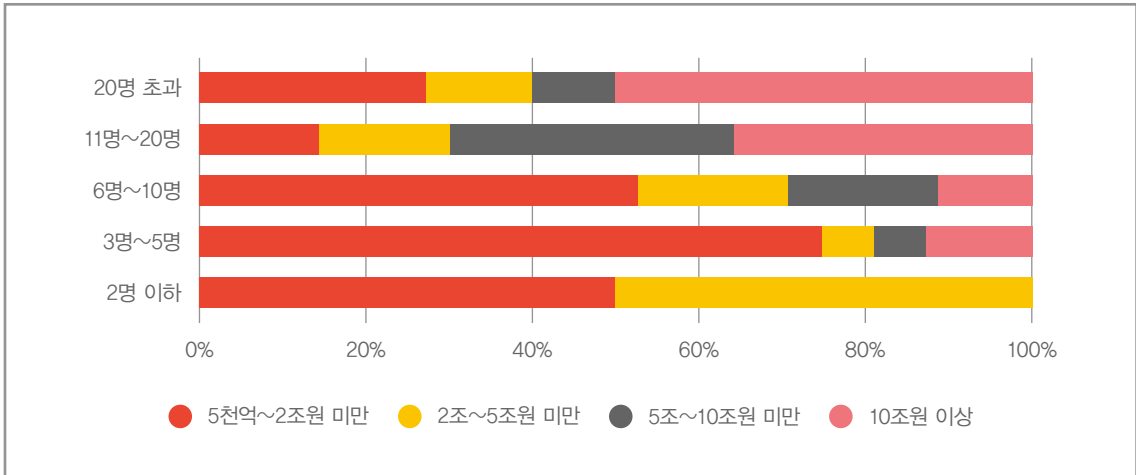
① 재무회계 부서 인력 규모

재무회계 부서 인력 규모는 '6명에서 10명 이하'가 50%, '11명에서 20명 이하'가 22%로 분석대상 회사의 72%가 '6명에서 20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재무회계 부서 인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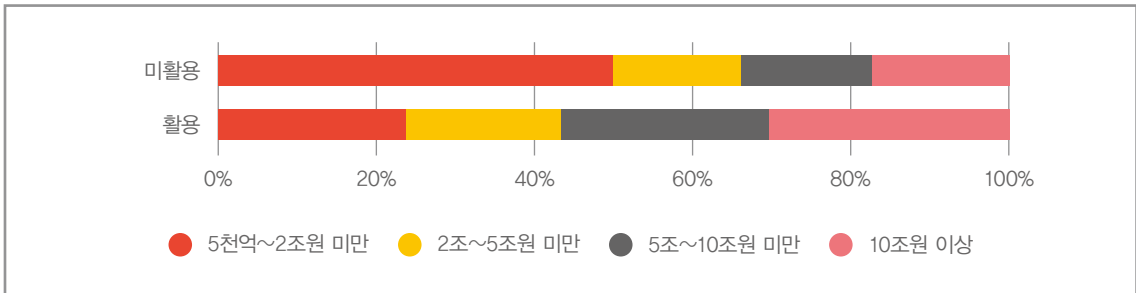
자산 규모별 재무회계 부서 인력 규모



② 재무결산 업무 외부자문 활용 현황

분석대상 회사의 25%가 재무결산 업무 외부자문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재무결산 업무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별 재무결산 업무 외부자문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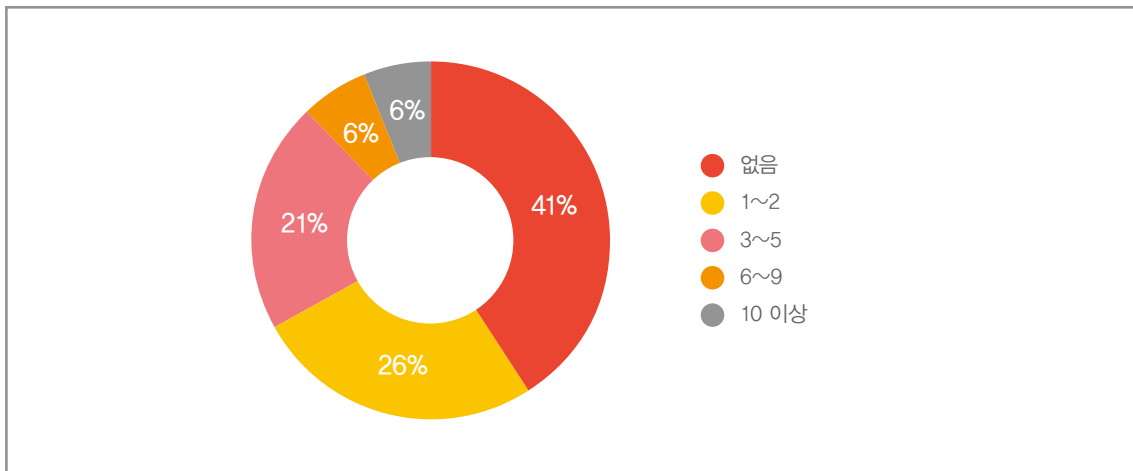
2. 주요 통제활동 미비점 현황 분석

(1) 미비점 발생 요약

① 단순한 미비점

분석대상 회사 중 단순한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가 41%, '1개 이상 2개 이하' 26%, '3개 이상 5개 이하' 21% 순으로, 분석대상 회사의 88%가 5개 이하의 단순한 미비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미비점 발생 유무



② 유의적 미비점

분석대상 회사 중 유의적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가 93%, '1개 이상 2개 이하'로 발생한 회사가 5%, '3개 이상 5개 이하'가 2%로 나타났다.

③ 중요한 취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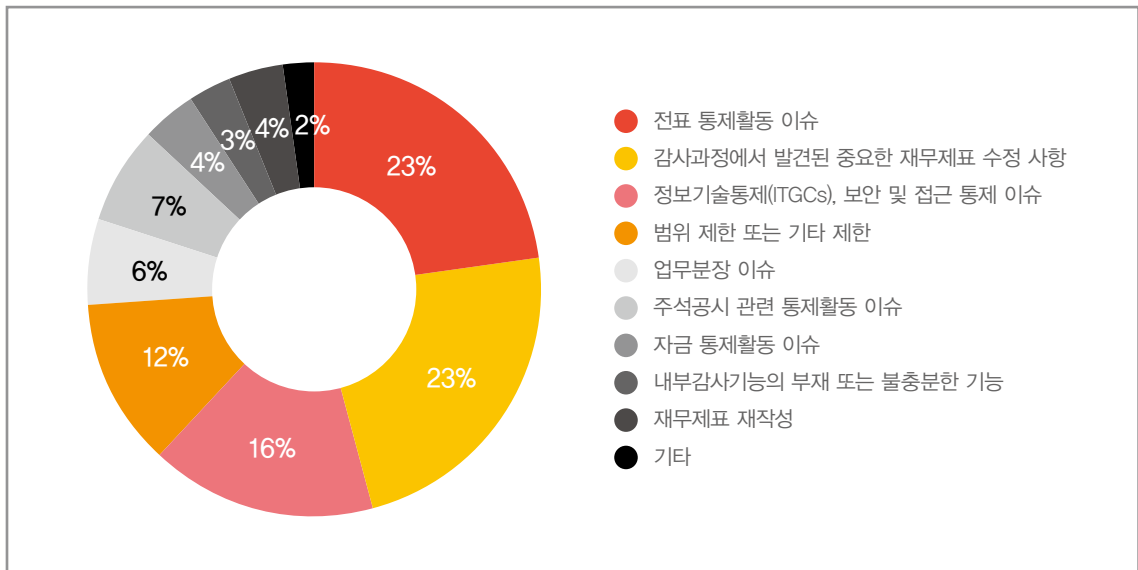
분석대상 회사 중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가 99%, '6개 이상 9개 이하'로 발생한 회사가 1%로 나타났다.

(2) 미비점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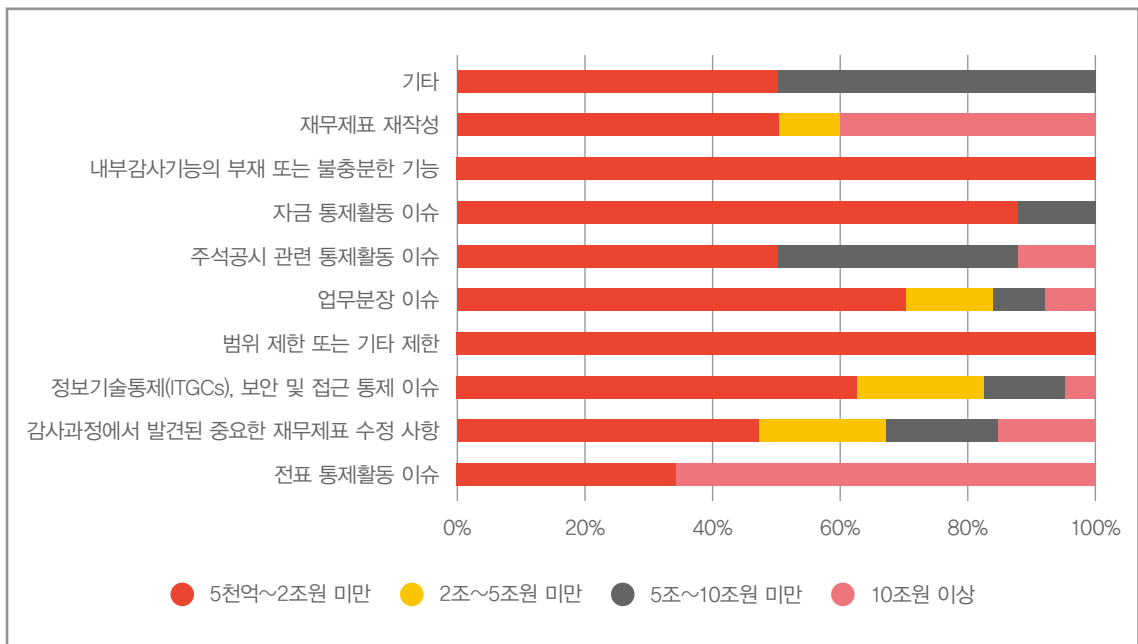
① 미비점 원인 주요 유형(Control issue)

미비점 발생 원인 주요 유형으로는 '전표 통제활동 이슈'가 23%,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재무제표 수정 사항' 23%, '정보기술통제(ITGCs), 보안 및 접근 통제 이슈' 16% 순으로, 전체 미비점 발생 원인 유형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미비점 원인의 주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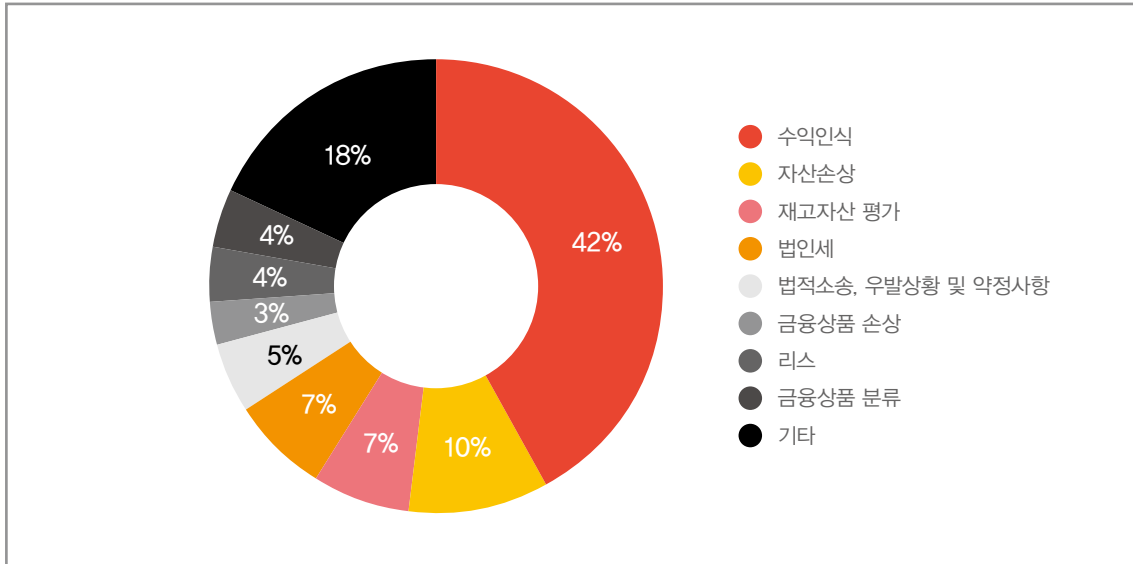
자산 규모별 미비점 원인의 주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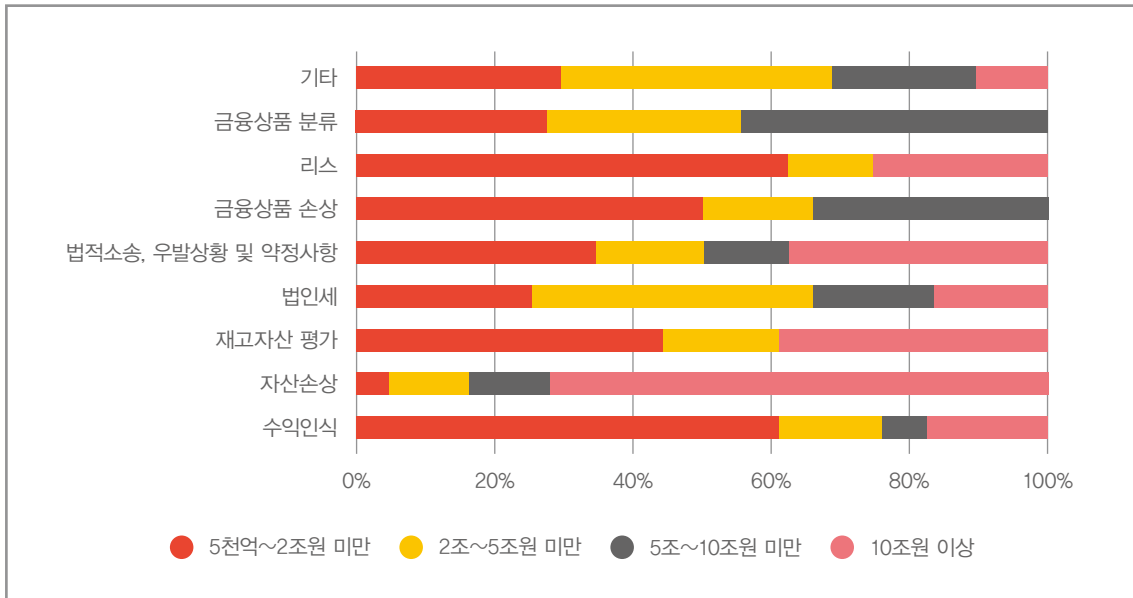
② 미비점 원인의 주요 재무제표 관련 영역(Accounting issue)

미비점 원인의 주요 재무제표 관련 영역은 '수익인식' 42%, '자산손상' 10%, '재고자산 평가' 7% 순으로, 전체 미비점 원인의 주요 재무제표 관련 영역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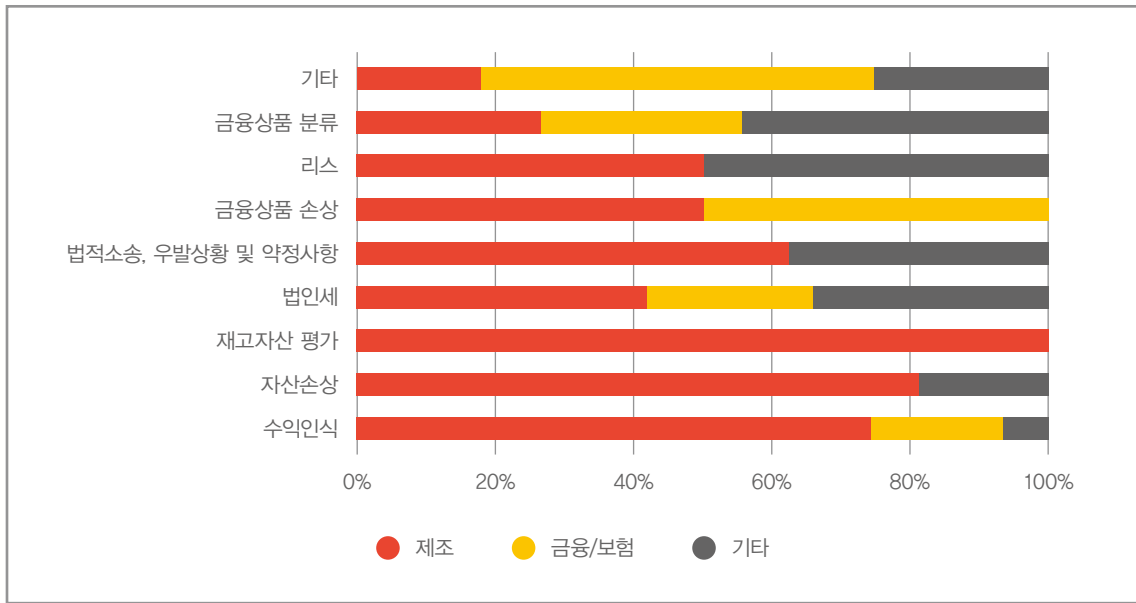
미비점 원인의 주요 재무제표 관련 영역



자산 규모별 미비점 원인의 주요 재무제표 관련 영역



산업 구분별 미비점 원인의 주요 재무제표 관련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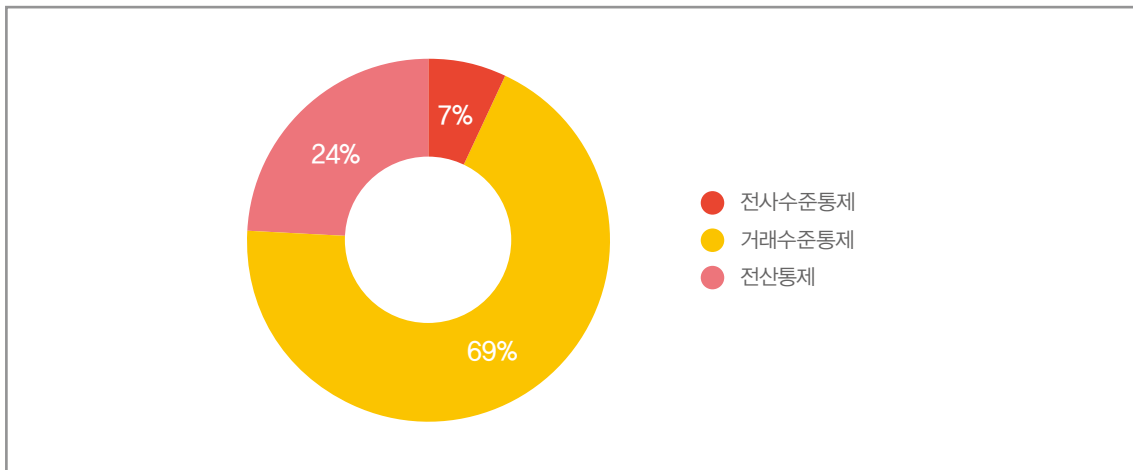


3. 외부감사인과 주요 논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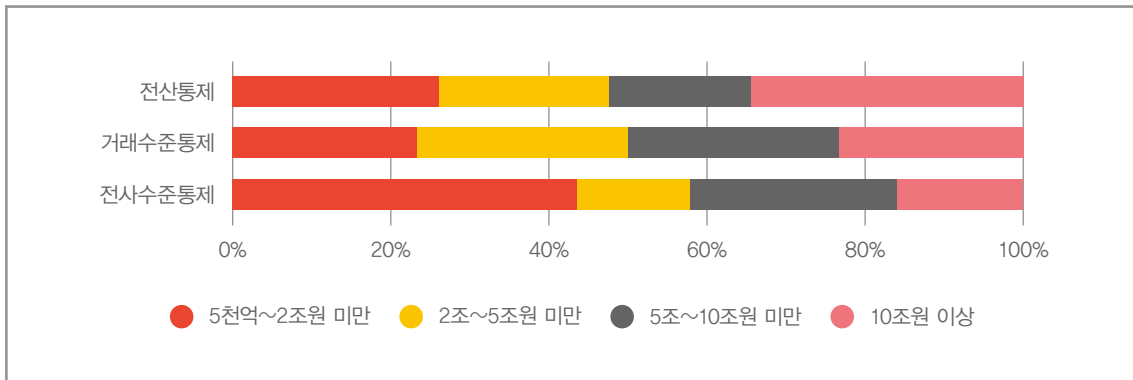
(1) 주요 논의 항목 요약

분석대상 회사의 감사인과 주요 논의 항목은 '거래수준통제' 관련 사항이 69%, '전산통제' 관련 사항이 24%, '전사수준통제' 관련 사항이 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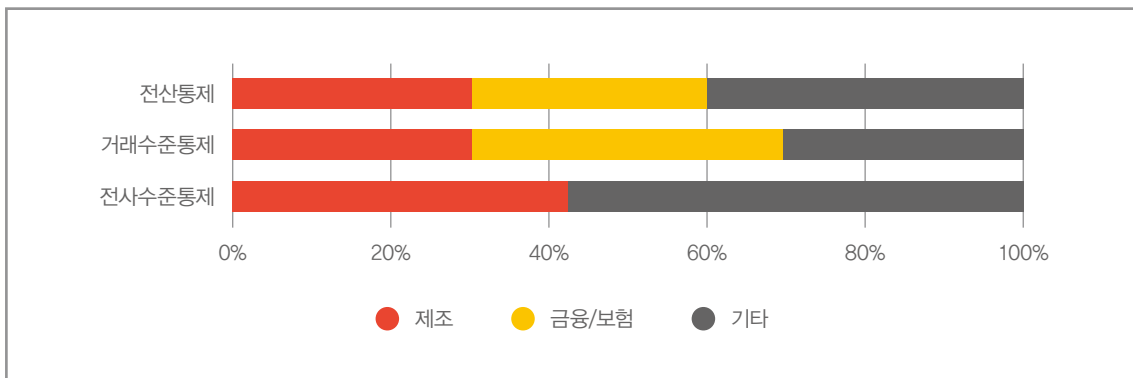
감사인과 주요 논의 항목



자산 규모별 감사인과 주요 논의 항목



산업 구분별 감사인과 주요 논의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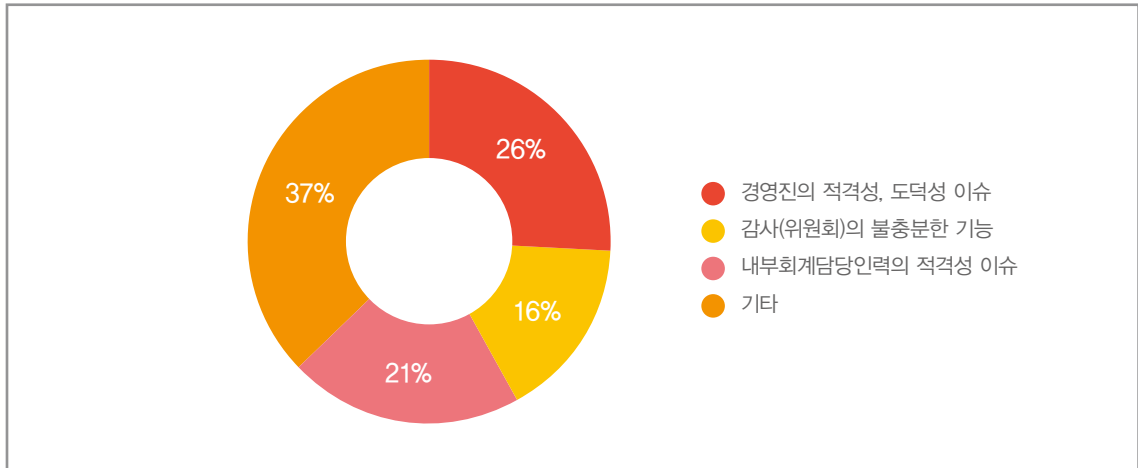


(2) 세부 논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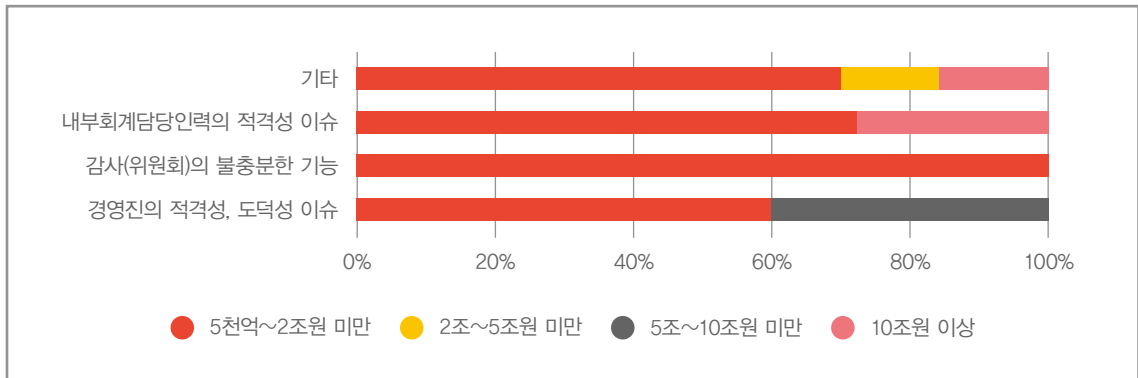
① 전사수준통제

전사수준통제 관련 주요 감사인 논의 사항은 '경영진의 적격성, 도덕성 이슈' 26%,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적격성 이슈' 21%, '감사(위원회)의 불충분한 기능' 16%가 주로 부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사수준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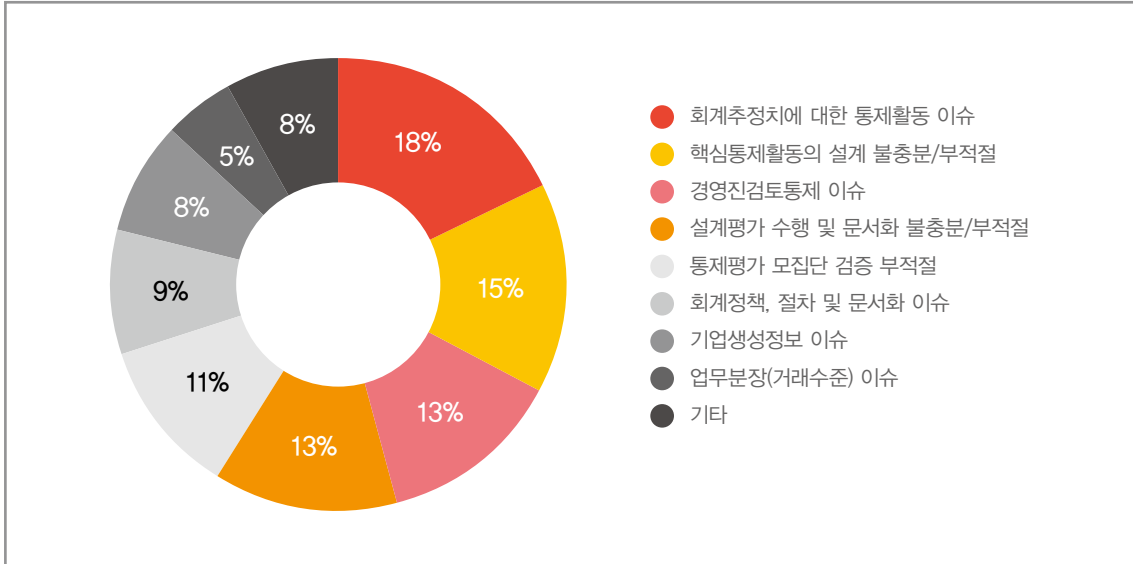
자산 규모별 전사수준통제 감사인과 주요 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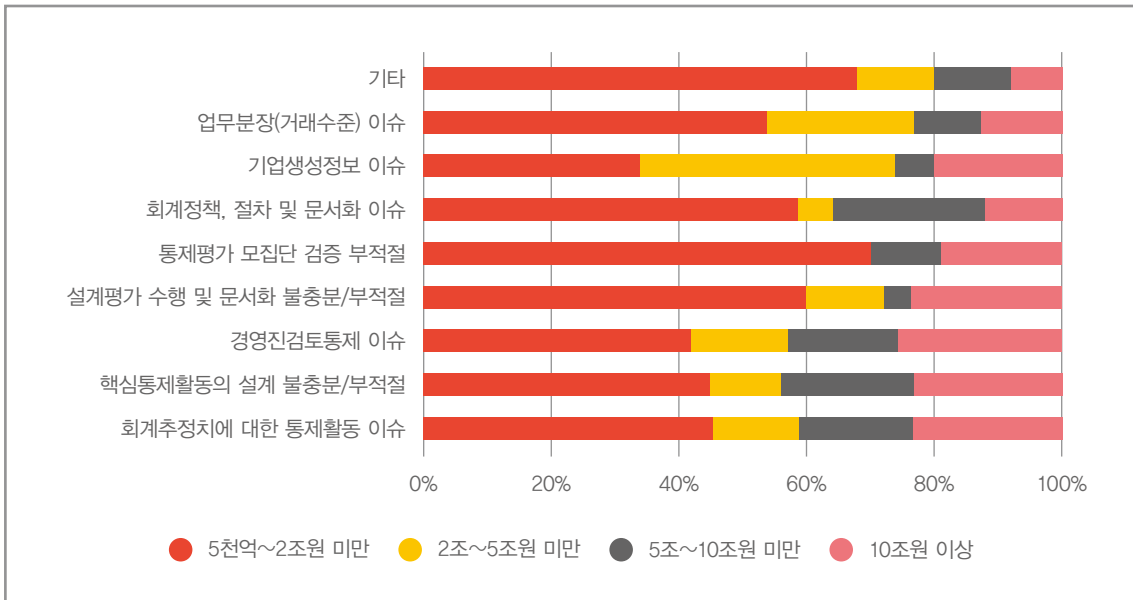
② 거래수준통제

거래수준통제 관련 주요 감사인 논의 사항은 '회계추정치에 대한 통제활동 이슈' 18%, '핵심통제활동의 설계 불충분/부적절' 15%, '경영진검토통제 이슈' 13%, '설계평가 수행 및 문서화 불충분/부적절' 13%가 주로 부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래수준통제 감사인과 주요 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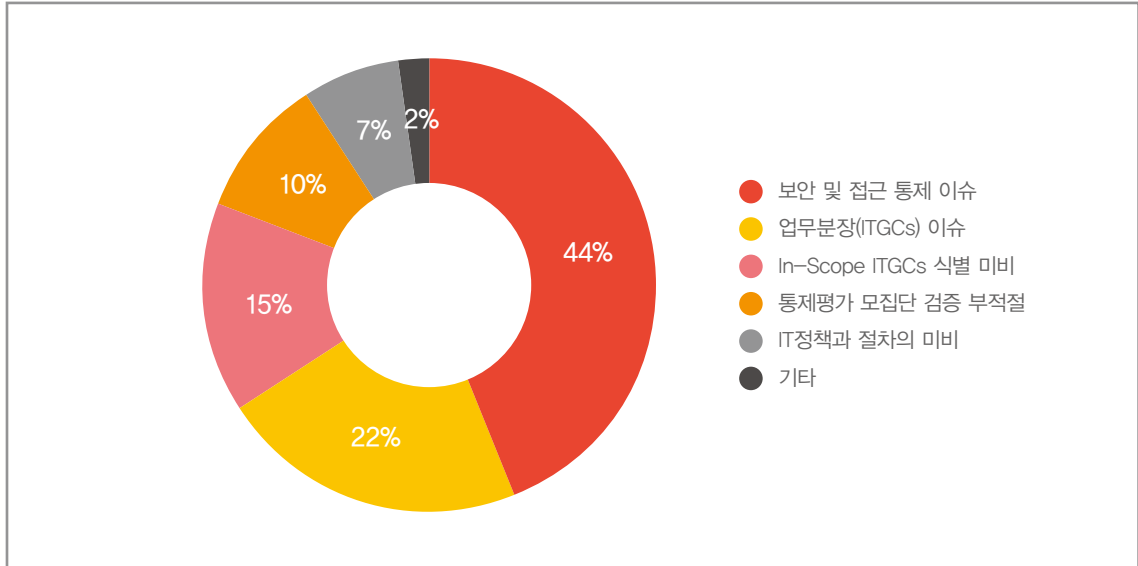
자산 규모별 거래수준통제 감사인과 주요 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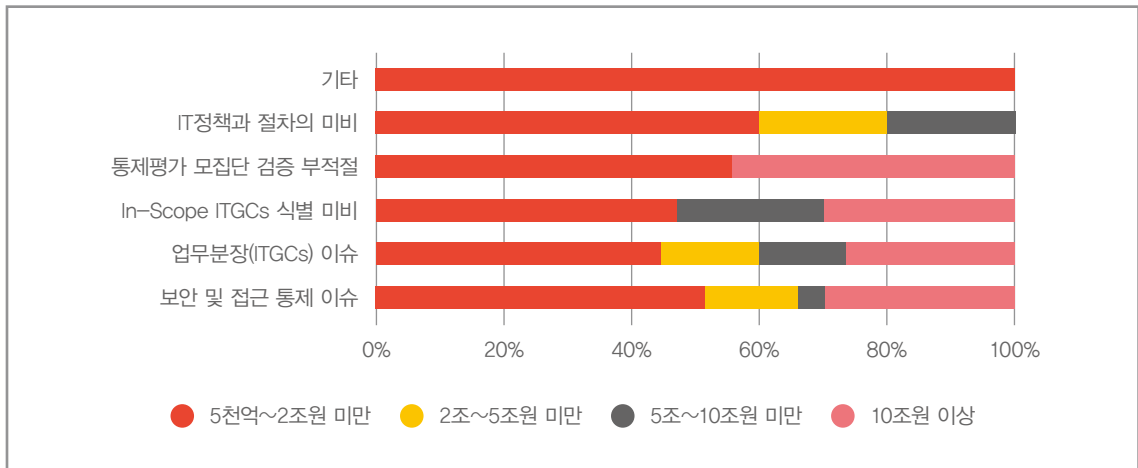
③ 전산통제

전산통제 관련 주요 감사인 논의 사항은 '보안 및 접근 통제 이슈' 44%, '업무분장(ITGCs) 이슈' 22%, 'In-scope ITGCs 식별 미비' 15%, '통제평가 모집단 검증 부적절' 10% 이슈가 주로 부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s) 감사인과 주요 논의 사항



자산 규모별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s) 감사인과 주요 논의 사항



4.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동향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¹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가 1년씩 연기된다. 이를 위한 시행령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자산규모	적용 사업연도		
	개별/별도	연결(현행)	연결(개정)
2조원 이상	2019	2022	2023
5천억원~2조원	2020	2023	2024
1천억원~5천억원	2022	2024	2025
1천억원 미만	2023		

단,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현행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²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개별·별도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계도기간 감리운용 (개별·별도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본격 감리운용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감리 착수	①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경우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감리 범위	<p>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p> <p>[감사인]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p>	<p>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p> <p>[감사인]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p>
감리 조치	<p>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p> <p>[감사인]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p>	<p>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p> <p>[감사인]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p>
감사인 감리시		
감리 범위	<p>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p>	<p>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동일하며,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p>
감리 조치	<p>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개선권고' 조치</p>	<p>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p>

1 금융위원회,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7.14

2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7.12

202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본 내용은 지난 7월 발간한 '감사위원회를 위한 Trend Report 2021' Vol.1을 수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위한 Trend Report 2021' Vol.1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acc/samil-acc-trend-report-2021_vol1.pdf



2021¹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

지난 5월 31일까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총 215개²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2020년의 211개사와 비교할 때 4개사가 증가한 수치이다.

215개사 중 금융사가 40개사, 비금융사가 175개사이며, 그 외에 12개사가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2021년에는 ESG의 중요성이 급부상하였고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더 이상 법적인 의무에 따라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실무에 그칠 사항이 아니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고민하여 장기적인 기업가치 측면에서 회사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찾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민하게 대응해 가야 할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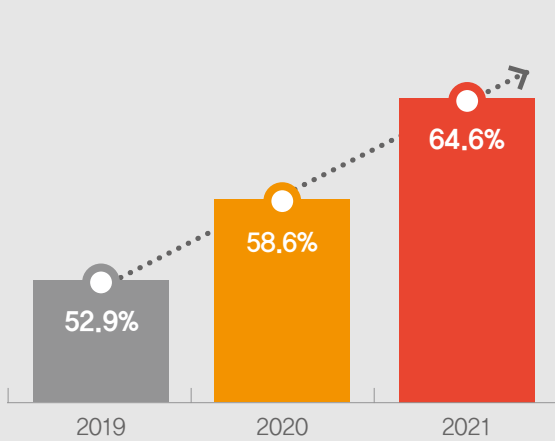
본고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주목해야 할 추세와 시사점을 검토한다.³

-
-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년도 말일로서, 본고는 분석을 위해 2020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확인하였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에 첨부되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작성 기준시점을 보고서 제출일 현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제목을 '202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으로 정하였다.
 - 2 한국거래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 215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677조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981조원)의 약 84.6%를 차지한다고 한다.
 - 3 분석 대상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갈음한다. 그런데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포함되지 않는다.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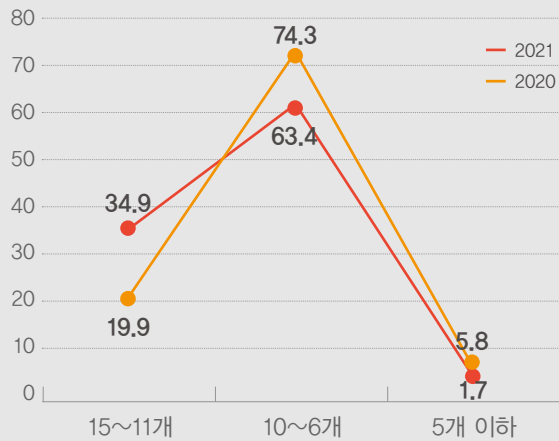
① 3년간 평균 준수를 추이

2021년(2020년)에 전년 대비 6% 포인트
(5.7% 포인트) 개선



② 준수 현황별 회사 분포

15개 핵심지표 중 11개 이상 준수한 회사 비율이
15% 포인트 증가



③ 준수율이 높은 지표 Top 5

준수율(%)	핵심지표 항목
100%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7%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5%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3%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88%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④ 준수율이 낮은 지표 To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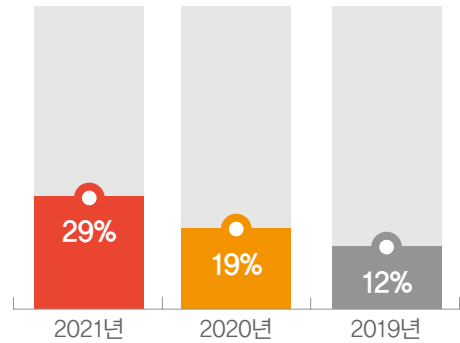
준수율(%)	핵심지표 항목
5%	⑧ 집중투표제 채택
29%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0%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43%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8%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주주

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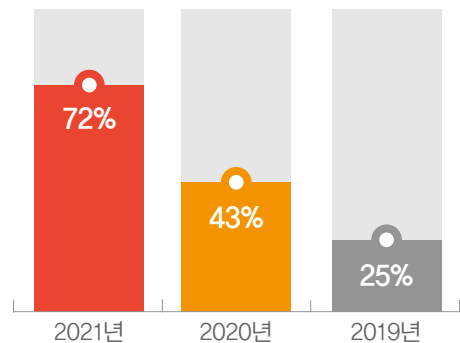
다른 핵심지표에 비해 동 지표의 준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로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정보를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⁴ 소집공고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 핵심지표를 준수했다고 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⁵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으로 법률 준수를 위한 기한인 2주에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20년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총 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게 되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것도 동 지표의 준수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⁶



2.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은 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시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로 인해 정족수 미달의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 정기 주총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⁷ 여기에는 전자투표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 주총 기간에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에는 개정 상법과 코로나19에 대응한 노력이 준수율을 30% 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상장회사 중 2021년 정기주총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총 1,253개 사(58.8%)이다.⁸ 본고의 분석 대상인 대규모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전체 상장회사에 비해 전자투표 제도를 실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4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58호 서식>

5 상법 제363조 제1항, 제542조의4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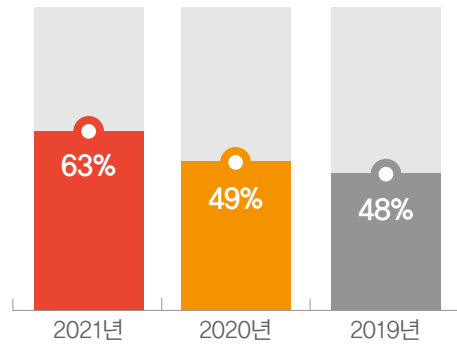
6 단,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7 금융위원회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2021.1.22

8 경제개혁연구소, 2021년 정기주총 전자투표·온라인주주총회 도입 현황, 2021.4.15

3.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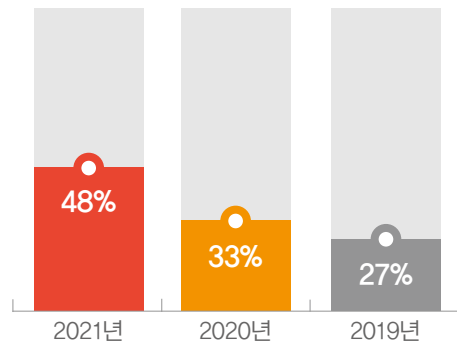
동 지표의 준수율은 지난 2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주총회 집중일이라 함은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한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은 주총 집중예상일을 연도별로 3개씩 선정하여 공지하고, 이를 제외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협회에 통보한 회사에 인센티브(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를 부여한다. 반면,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전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비율이 2021년 49.8%, 2020년 52.9%, 2019년 49.3%로 개선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2020년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총 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게 되면서, 주총이 3월말에 물리게 된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4.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였다.

배당 관련 핵심지표의 준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을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배당정책이란 단순히 당기의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기준과 방향을 의미하며, 배당실시 계획은 당기의 배당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또한, 통지는 공시, 주주 개별통지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IR, 홈페이지 게시 등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수행된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69%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도 전체 현금배당 법인의 77%에 해당하는 등 배당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 반해 관련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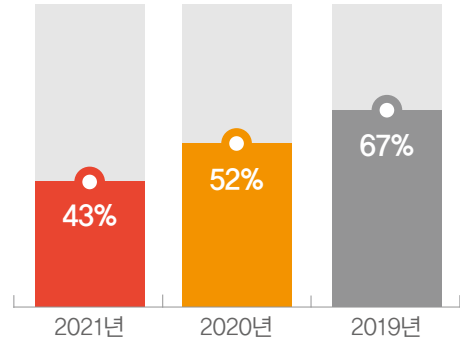
또한, 사업보고서에는 '배당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배당수준의 방향성,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된 재무지표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63%에 달하는 회사의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충실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¹⁰

9 한국거래소, 최근 5년간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 2020.4.24

10 금융감독원,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2021.6.2

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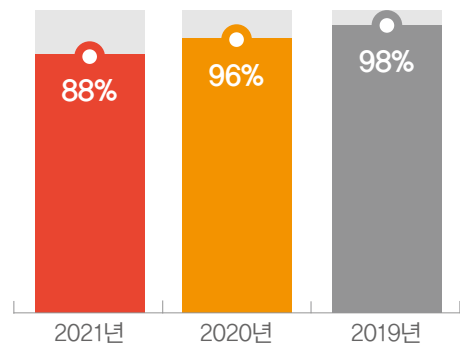
2020년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사항이 보다 구체화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단순히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의 준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집단)의 구성 또는 선정을 위한 기준, 교육, 평가, 정기적 개선보완 등이 실제 이행되는 경우에만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만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구체화함에 따라 준수 여부의 판단이 명확해짐과 동시에 해당 요건을 모두 준수하기 어려워진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명문화된 승계 정책이 없어 미준수로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명문화한 정책은 없으나 내부적인 절차는 갖추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특성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실무적으로 생소하여, 각 회사에 적합한 승계정책을 단기간에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세부 원칙을 별도로 분리하고 설명 대상 항목을 상세히 열거하여 기재 누락을 방지하였다.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됨에 따라 준수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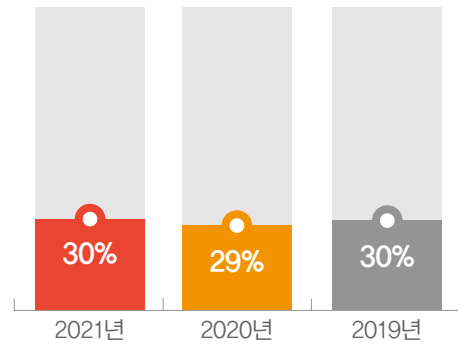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사는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현황,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현황,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동 핵심지표를 준수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에 관한 정책은 갖추고 있지만 리스크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미준수로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7.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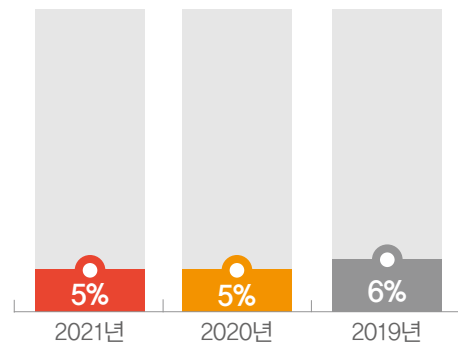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은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것이 모든 기업에 최선이 아닐 수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가 권장되고 있다. 미준수한 사례 중에는 회사의 특성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고, 향후 분리를 위해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개정할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만약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선임 사외이사를 두어 의장 역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8.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상법 제382조의2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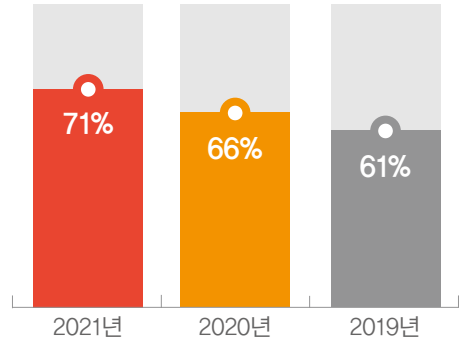


집중투표의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의2제3항). 그리고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상법 제382조의2제4항).

집중투표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제도이다.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9.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동 지표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또는 자본 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거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 이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동 핵심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임원의 현재 존재 여부가 아닌 이러한 임원의 선임을 금지하는 명시적 기준 또는 절차의 수립 여부 및 실제 부존재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 범위에는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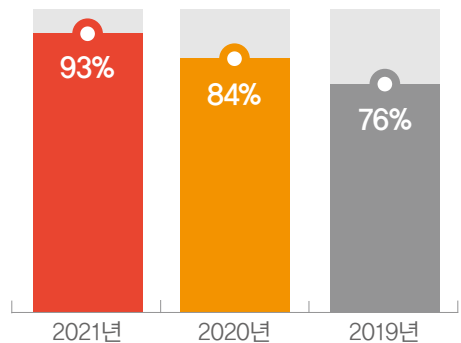


동 지표는 3년간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변화 폭이 작다. 거래소가 2020년에 개정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세부원칙별 모범사례’에는 동 지표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공시 모범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당사에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관리제도에 의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임원 선임 및 보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운영하여 임원의 역량과 리더십 등 해당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외부 영입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전 자체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임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이사가 선임 되어있지 않습니다.”

10.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없다.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즉, 법적인 요구사항이 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에 재임 중인 장기 재직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100%의 준수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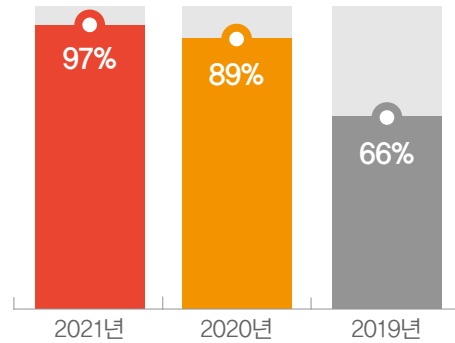


감사기구

11.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하였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97%라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교육 주제 선정이나 실시 방식에 대한 실무가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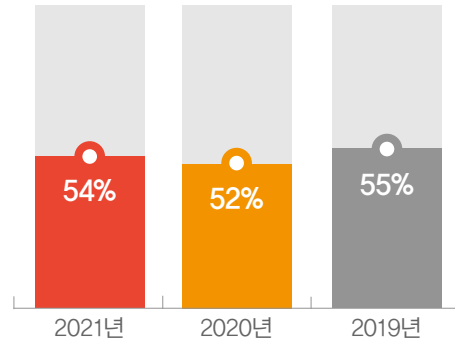
한편,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을 설명한 것은 교육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므로, 회사는 연간 교육프로그램의 주제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검토하고,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표의 준수율이 가시적인 개선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준수'에 대한 해석이 보다 엄격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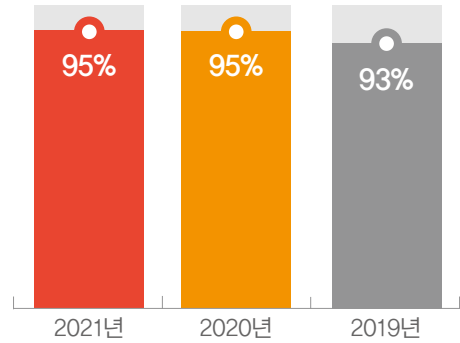
2020년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독립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되었다. 즉,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 평가 및 이동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여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란,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며,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는 부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준수 사례에는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와 전담 조직은 있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다.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한다.

2020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동 지표의 준수 기준을 상법과 일관되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정하였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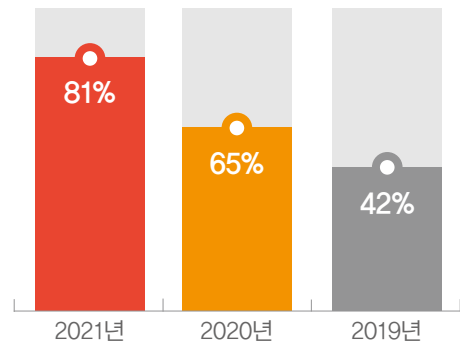
다만, 내부감사기구로 감사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미준수로 기재하였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모든 회사는 동 지표를 준수하였다.



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81%로 2년 전에 비해 준수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미준수한 회사에는 매분기마다 이러한 회의를 갖지 못했거나, 모든 회의에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 등이 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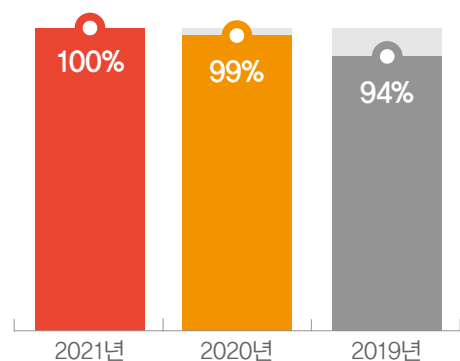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갖는 회의는 기업의 문화, 재무보고 이슈, 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실무적으로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직후에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회사는 사전에 감사위원회 회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과도 일정 논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 회의에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감사위원회 업무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예를 들어, 재무보고 관련 부서의 임직원)의 참석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동 지표는 이미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2021년에는 모든 회사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회사들의 내부감사기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 등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내부규범에 정보 접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년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지표	2021 (175개사)	2020 (171개사)	2019 (161개사)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9%	19%	12%
	② 전자투표 실시	72%	43%	25%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63%	49%	48%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8%	33%	27%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3%	52%	67%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88%	96%	98%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30%	29%	30%
	⑧ 집중투표제 채택	5%	5%	6%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1%	66%	61%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3%	84%	76%

구분	핵심지표	2021 (175개사)	2020 (171개사)	2019 (161개사)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	89%	66%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4%	52%	55%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5%	95%	93%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81%	65%	42%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00%	99%	94%



Audit Committee Excellence Series:

감사위원회를 위한 체크리스트

감사위원회의 주요 감독 책임에 대한 자체 점검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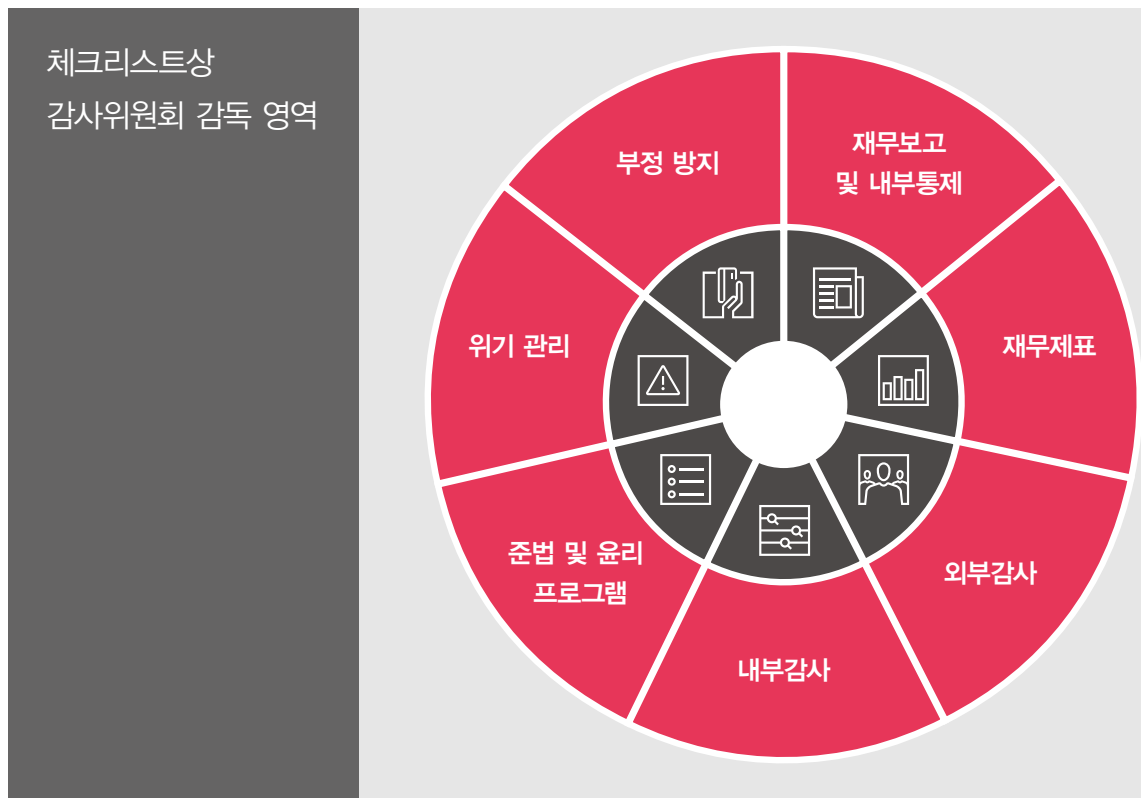
많은 감사위원회가 매년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감사위원회 구성, 변동 사항 및 주요 책임에만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본 체크리스트를 통해 일반적인 감사위원회 활동과 이와 관련된 통찰을 검토해 보면서 감사위원회 활동을 평가해 보자.

대부분의 감사위원회는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안건 설정, 회의 자료의 효율성 등을 주로 다룬다.

본 체크리스트는 감사위원회가 특정 책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활동이 잘 조율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얻음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본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평가와 동일한 주제를 일부 다루지만 보다 광범위하며 감사위원회의 주요 책임별로 작성되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책임이란 재무보고, 내부통제, 외부감사, 내부감사, 준법, 윤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감독이다. 또한, 회의 자료나 안건과 관련된 주제와 같이 감사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감사위원회는 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현재 감사위원회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열린 논의를 할 수 있다. 각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면서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취할 조치가 떠오를 수도 있다. 이러한 개선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이며 모범 사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체크리스트가 각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해 모든 사항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구성과 위험 감독이 위원회에 할당되는 방식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독하는 영역이 추가되기도 한다.



재무제표,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감독:

	예/아니오	논의 내용 및 후속조치
새로운 회계기준: 새로운 회계기준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적용 계획을 이해한다.		
중요한 회계정책: 회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한다.		
재무제표: 연간 재무제표를 읽으면서 회사의 영업이나 다른 알려진 정보와의 일관성 및 완전성을 평가하고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논의한다.		
재무제표: 중간 재무제표와 관련 공시를 검토하고 연간 보고와의 일관성을 이해한다.		
이익 예측 등: 회사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보도 자료 및 기타 재무 정보(예: 이익 전망, 미래 예측 정보, 평가기관용 정보)와 관련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이에 익숙하다.		
Insight: 이익 전망을 제공하는 경영진의 철학을 이해한다. 현재 이익을 전망하는 방식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동인에 대한 경영진의 초점을 반영하고, 보상 인센티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경영 철학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CEO 또는 CFO로 교체될 경우 투자자와 다른 이해관계자가 변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고려한다.		
Insight: 미래 예측 정보와 관련된 회사 정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공시: 경영진이 재무제표상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재무제표 공시 변경 사항을 이해한다.		
Insight: 공시와 관련된 주요 논의 사항이나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공시 등에 관해 경영진에게 질문한다. 이는 고위 경영진과 감사위원회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성: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재무보고 목적을 위해 양적 및 질적으로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규제 환경의 변화: 규제 환경의 변화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사업보고서 등: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내용(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등)이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p>Insight: 외부감사인의 선정, 감독 및 평가, 해당되는 경우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감독과 같은 활동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것을 고려한다.</p>		
<p>고위험 영역: 중요한 경영진 판단이 필요하거나 오류나 부정에 취약한 고위험 영역에 대한 재무보고 검토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는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한 항목이 포함된다.</p>		
<p>발견된 오류: 당기 또는 전기 재무제표에서 발견된 중요한 오류와 이를 경영진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재무제표 재작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경영진의 결론에 동의한다.</p>		
<p>내부통제: 경영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내부통제 테스트에 대한 접근 방식과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각자의 결론을 논의한다.</p>		
<p>내부통제: 중요한 취약점 또는 유의적인 미비점과 경영진의 개선 계획을 이해한다.</p>		
<p>중대한 왜곡표시: 재무제표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왜곡표시될 수 있는 위험을 회사가 적절히 다루고 있는지 확인한다.</p>		
<p>회계정책 변경: 경영진의 재량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이유와 함의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잠재적인 반응을 고려한다.</p>		
<p>추정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추정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결론의 합리성을 이해한다.</p>		
<p>재무성과: 당기 재무성과가 과거 재무성과 및 예산과 갖는 유의적인 차이의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하고, 경영진의 설명이 회사의 성과에 대한 기존 이해와 일관되는지 확인한다.</p>		
<p>비정상적/복잡한 거래: 비정상적이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기말 시점에 거래량이 급증한 거래와 관련 회계 처리를 검토하고, 회사에 대한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적절성을 평가한다.</p>		
<p>특수관계자 거래: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경영진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관련 공시에서 확인한다.</p>		
<p>법률 고문과의 정기 회의: 법률 고문과 정기적으로 만나 회사의 소송, 클레임, 우발사항 또는 기타 중요한 문제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p>		

규제 기관: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에 관한 회사와 규제 기관 간의 서신을 검토한다.		
후속사건: 후속사건이 재무정보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외부감사 감독:

	예/아니오	논의 내용 및 후속조치
회계법인 선정: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그 업무를 평가하며, 담당 파트너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 계약기간, 산업전문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고려한다.		
감사보수: 감사보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Insight: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사 이해관계자(예를 들어, 의결권자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		
독립성: 감사 및 비감사 서비스를 사전에 승인하고, 보수(fee)의 영향을 이해하고, 수행한 비감사 서비스 유형을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모니터링한다.		
독립성: 현재 또는 과거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소속이었던 임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회사의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감사 계약: 외부감사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다.		
관계: 외부감사인과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열린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구축한다.		
Insight: 감사위원회 회의 사이 기간에 업무수행이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다음 회의를 준비하여 이슈나 우려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시기적절한 논의를 장려한다.		
비공식 회의: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진다.		
감사계획: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요약(위험평가 포함)을 수령한다.		
감사계획: 외부감사인의 계획상 중요한 변동이 있는지 검토한다.		

감사결과: 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왜곡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처리, 중요한 감사 수정사항, 핵심감사사항 등을 포함하여 외부감사인과 감사결과를 논의한다.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항목: 감사기준 및 법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한다.		
경영진진술: 경영진진술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내부감사 감독:

	예/아니오	논의 내용 및 후속조치
임명: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명, 교체, 평가, 보상 결정에 있어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 강화: 내부감사책임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내부감사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기능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내부감사책임자가 관리적으로 회사 내 적절한 고위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하여 내부감사의 위상과 객관성을 보장한다.		
Insight: 내부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내부감사 팀회의에 참석한다.		
내부감사 규정 및 계획: 내부감사 규정을 승인하고 연간 계획 및 중요한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위험이 적절히 커버되고 외부감사인과의 업무가 조정되도록 한다.		
Insight: 감사위원회가 감독해야 하는 다른 위험 영역(예: 사이버보안, 기업문화, 비재무정보 등)에 대한 지원이나 확신(assurance)을 제공받기 위해 내부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내부감사 자원: 내부감사에 충분한 예산과 자원이 확보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내부감사부서 인원의 역량과 근속도 고려한다.		
관계: 공식적인 회의 외의 기간에도 솔직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무: 내부감사의 임무가 명확하고 준수되고 있는지 이해한다.		
임무: 내부감사 역할이 감사위원회에 확신(assurance)을 제공하고, 경영진에게 가치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평가: 내부감사부서의 성과를 평가한다.		
비공식 회의: 정기적으로 내부감사책임자와 비공적인 회의를 갖는다.		
조사 결과: 내부감사 결과로서 중요한 발견사항이 적절한 수준에서 요약되어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지와 경영진에 의한 시정 조치의 현황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다.		
Insight: 사전 합의된 일정에 따라 개선 계획을 구현할 책임을 경영진에게 맡긴다.		

준법 및 윤리 프로그램:

	예/아니오	논의 내용 및 후속조치
내부신고 핫라인: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기된 주요 이슈의 잠재적 영향 및 해결 방안을 고려한다.		
Insight: 신고 접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그리고 중대한 내부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위기 계획이 있는지 확인한다.		
행동 규범: 회사의 윤리 및 행동 규범이 문화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이 윤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한다.		
행동 규범: 경영진이 직원에게 행동 강령을 제공하고 전체 직원의 연간 또는 정기 교육 이수를 확인하도록 한다.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 경영진의 의지와 기업 문화를 평가하고, 재무보고 및 준법과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Insight: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에게 회사의 기업 문화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비공식 회의: 법률 고문 및 준법감시인과 정기적으로 비공식적 회의를 갖는다.		
준법 프로그램: 법률과 규정의 준수, 식별된 중요한 문제 및 경영진의 대응에 대해 확신을 부여하는 회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위기 관리 감독:

	예/아니오	논의 내용 및 후속조치
위험 관리: 회사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감독 범위: 이사회를 대신하여 감독하는 주요 위험 (예: 사이버 보안)을 포함하여 위험 모니터링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독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사회와 함께 논의한다.		
Insight: 사이버 보안 감독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미국의 많은 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위험 감독 영역에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다.) 이는 다른 위험 영역 (예: 제3자 위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보상: 보상 인센티브가 재무보고에 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해한다.		
제3자: 회사가 제3자에 대해 수행하는 실사 및 모니터링과 경영진이 회사와 제3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부정 방지 감독:

	예/아니오	논의 내용 및 후속조치
부정위험: 재무보고 부정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경영진이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부정위험: 회사의 부정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고위험 영역: 고위험 영역(중요한 경영진 판단이 필요하거나 부정이나 오류에 보다 취약한 영역)에 대한 재무보고 검토에 중점을 둔다.		
뇌물 수수 및 부패: 뇌물 수수 및 부패의 위험과 경영진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윤리: 의미 있는 시간을 할당하여, 기업 문화를 논의하고 적절한 tone at the top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조사: 조사를 감독할 필요가 있을 때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부정 또는 불법 행위 발견 시).		

감사위원회 운영과 지원:

	예/아니오	논의 내용 및 후속조치
관계: 열린 소통 경로와 솔직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경영진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감독: 경영진에 대한 조언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고, 상황 변화가 필요한 경우 관여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		
감독: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고위 재무담당임원의 성과 및 역량을 평가한다.		
<p>Insight: 재무부서와 소통하여 재무부서가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재무 혁신 프로젝트를 이해한다. 감사위원회는 재무 혁신 프로젝트가 다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p> <p>(1) 재무부서의 보다 광범위한 역할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 (2)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및 프로세스 (3) 기술이 구현되고 수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른 재무부서의 인재 전략</p>		
감독: CFO 및 일정 직급 이상 재무팀 구성원의 승계 계획을 모니터링한다.		
감독: 경영진이 회의에 적절히 참여하게 하고 발표가 아닌 논의에 중점을 둔다.		
감독: 정기적으로 경영진과 비공식적인 회의를 갖는다.		
구성: 위원장의 교체 계획을 고려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승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성: 각 구성원은 독립적이며, 필요한 수준의 재무 이해력, 재무 및 회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구성: 신규 감사위원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견고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도록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업데이트: 이사회에서 승인한 감사위원회 규정의 준수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고려한다.		
Insight: 감사위원회 규정이 감사위원회 의무를 완전히 다루고 있는지와, 감사위원회가 약속하고 이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책임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감사위원회 활동, 주요 이슈, 중요한 조치 사항 및 실행 계획을 논의한다.		

<p>회의 및 안건: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충분한 횟수의 회의를 적절한 시간 동안 개최한다.</p>		
<p>Insight: 일정 계획표를 사용하여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량도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p>		
<p>회의 및 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을 주도하고 구성원이 의견을 제공하여 회의를 적절히 계획한다.</p>		
<p>Insight: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적절한 수준의 자료를 적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제공받고 회의에서 의미 있는 의견과 통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p>		
<p>회의 및 안건: 회의록이 회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적절한 수준으로 기술하는지 확인하고 적시에 검토 및 승인한다.</p>		
<p>회의 및 안건: 해당 안건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담당자의 회의 참석이 필요하다. 단, 토론을 방해할 수 있는 참관자 수를 제한한다.</p>		
<p>회의 및 안건: 회의와 회의 사이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긴박한 상황을 방지한다.</p>		
<p>회의 및 안건: 관련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한다.</p>		
<p>위원회 자체 평가: 매년 감사위원회 전체 수준의 업무를 평가하여 개선 사항을 고려한다.</p>		
<p>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위원장이 강력한 리더십, 효과적인 토론 및 업무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 위원회를 적절하게 리드할 수 있는 시간과 회계 및 재무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p>		
<p>지속적인 교육: 모든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회사의 사업, 회계기준 제·개정, 위원회의 새로운 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p>		

데이터로 보는 2020년 핵심감사사항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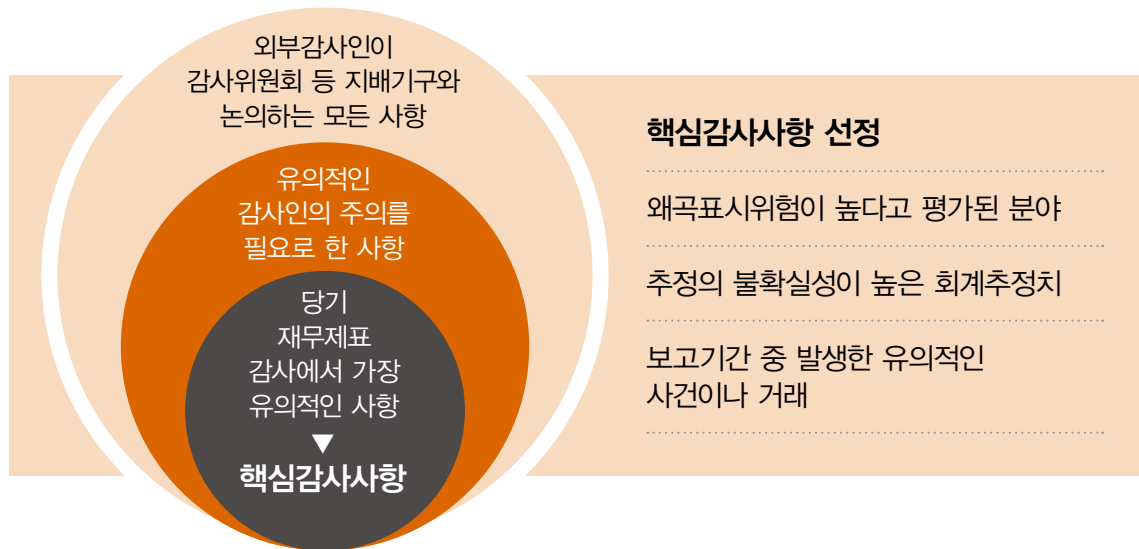
외부감사인이 2020년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항목은 무엇일까?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020년 핵심감사사항 현황을 살펴보자.



1 2019년 현황은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13, 1, 2019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분석 참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당기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감사 계약 단계부터 감사 종료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며,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한다.



분석 대상: 총 436개 상장회사

자산 2조원 이상

170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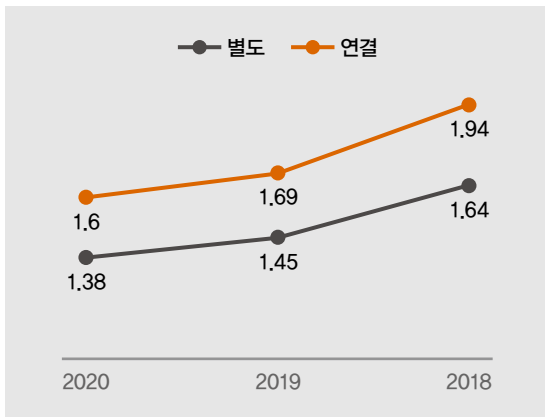
자산 2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266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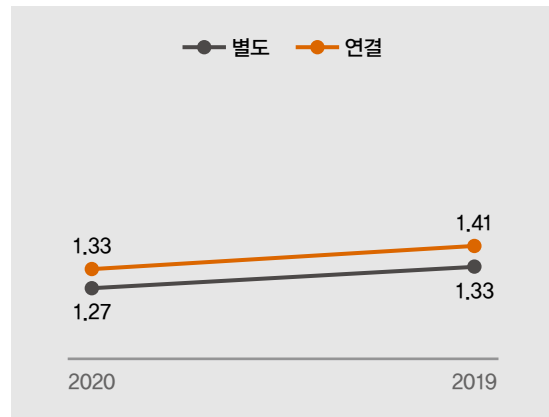
1. 평균 개수

핵심감사사항이 단계적으로 도입³된 2018년 이후 지난 3년간 핵심감사사항 개수는 별도(개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조원 이상 핵심감사사항 평균 개수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핵심감사사항 평균 개수



Audit Analytics가 국제감사기준(ISA)을 적용하는 전세계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핵심감사사항 개수는 2016년부터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 개수는 우리나라보다 약 1개 많으며, 최초 3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	의견수(회사수)	핵심감사사항 개수	평균 개수
2016	1,810	5,031	2.78
2017	3,463	8,806	2.54
2018	3,812	9,316	2.44
2019	3,673	9,231	2.51
2020*	290	838	2.89
Total	13,048	33,222	2.63

* Partial year

출처: Audit Analytics, An Overview of KAMs – 2019, 2020,8,19)

2 업종별 개수 분석은 본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평균 개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핵심감사사항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2018년 2조원 이상, 2019년 1,000억원 이상, 2020년 전체 상장기업에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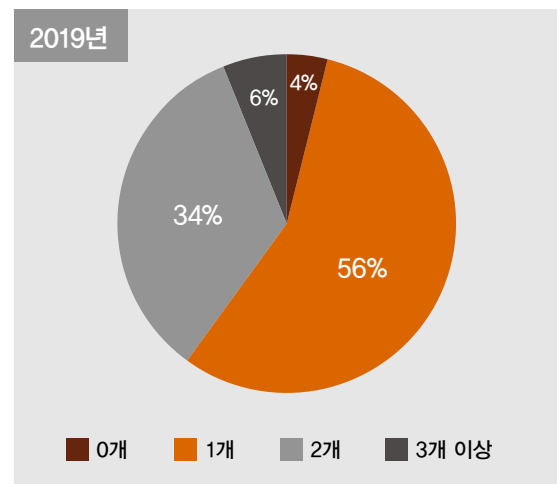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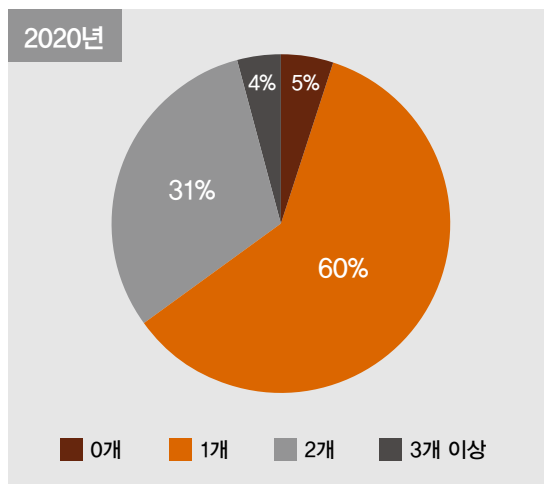
2. 개수 분포

2조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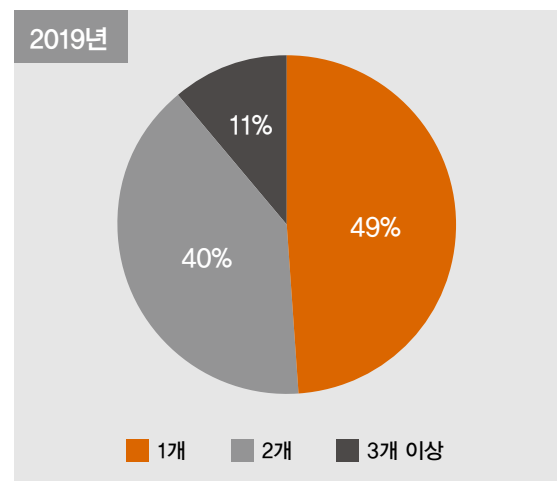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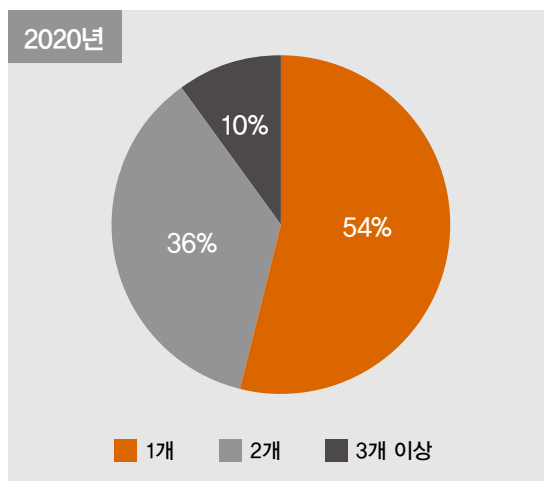
별도재무제표의 핵심감사사항이 없는 회사는 8개사로 모두 금융지주회사였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아닌 4개사만 제외하고 모든 분석 대상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이 보고되었다.

별도, 연결 모두 핵심감사사항 개수가 1개 또는 2개인 회사 비율이 90% 정도로 작년과 유사하며, 핵심감사사항이 1개만 기재된 회사가 상대적으로 늘었다.

[별도] 2조원 이상 핵심감사사항 개수



[연결] 2조원 이상 핵심감사사항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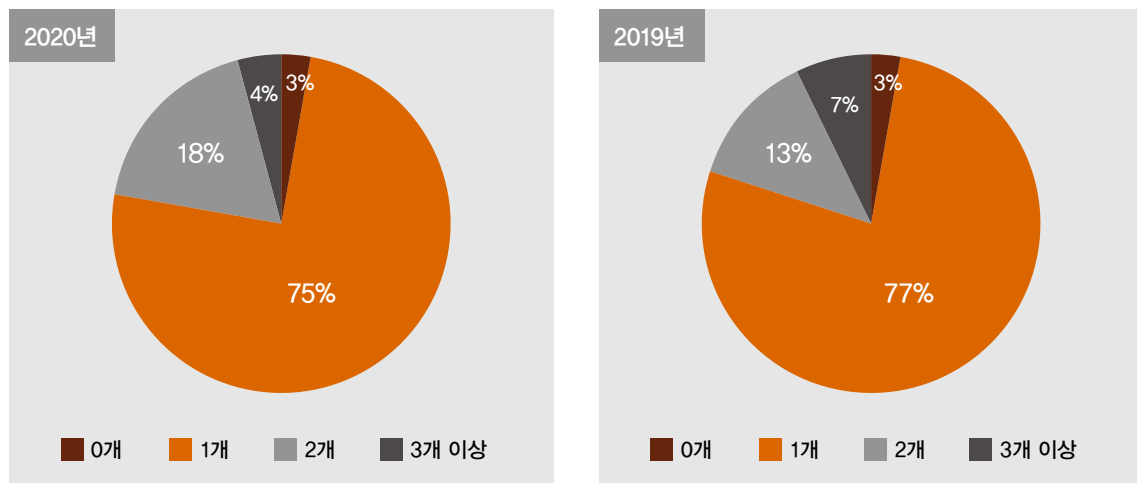


5천억 이상 2조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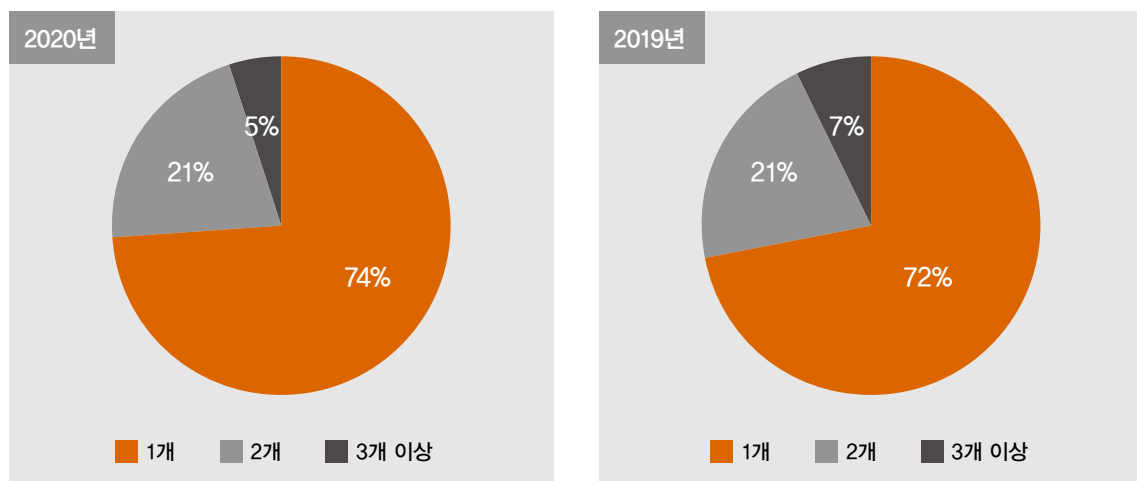
별도재무제표의 핵심감사사항이 없는 회사는 8개사로 대부분 지주회사였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아닌 회사는 19개사였으며, 나머지 회사 중 1개사를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이 보고되었다.

핵심감사사항 개수가 1개 또는 2개인 회사 비율이 별도 93%, 연결 95%로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핵심감사사항 개수



[연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핵심감사사항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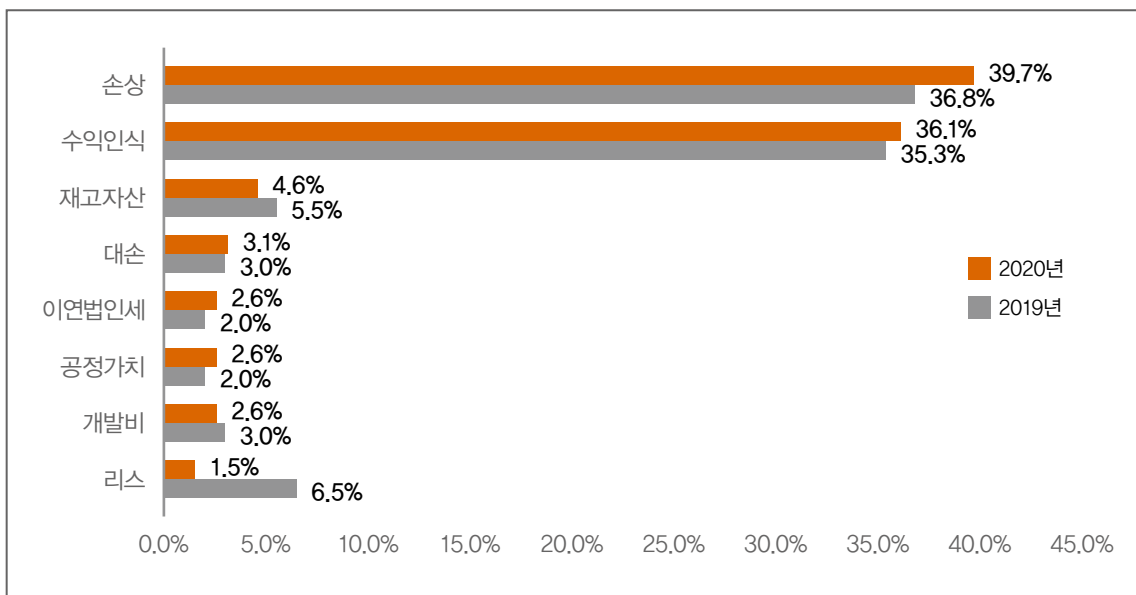
3. 핵심감사사항 항목별 분포⁴

2조원 이상 (비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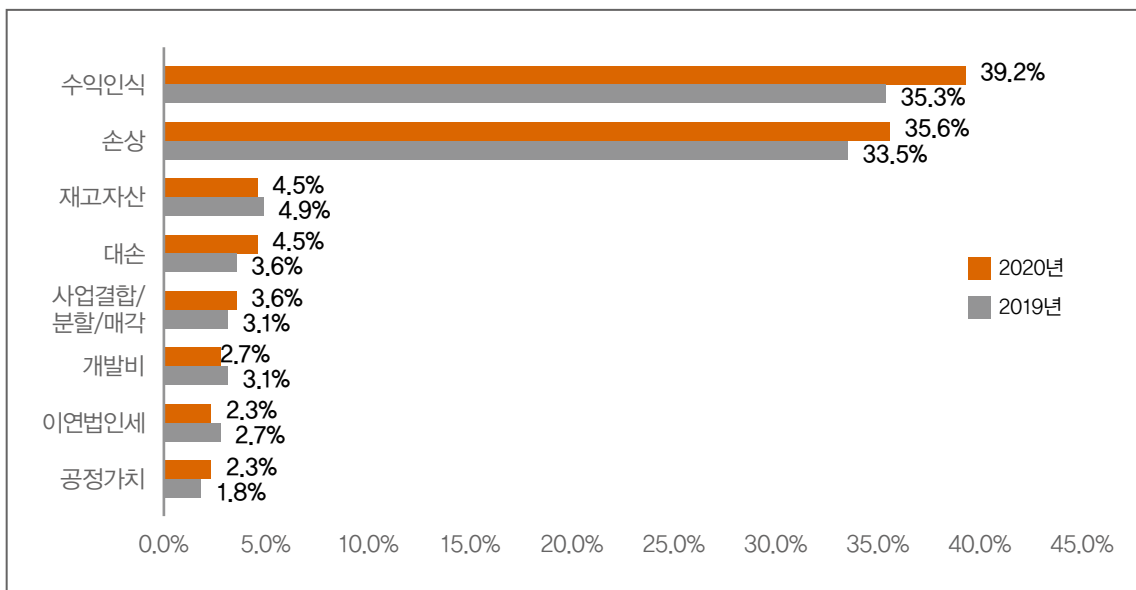
자산 2조원 이상 비금융회사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2019년과 마찬가지로 자산손상과 수익인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에 해당했으며, 2019년에 비해 두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연법인세, 공정가치 관련 핵심감사사항을 기재한 비율도 늘어났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도 2019년과 동일하게 수익인식과 자산손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고 대손, 사업결합에 관련된 핵심감사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유형 분포 (비금융업)



[연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유형 분포 (비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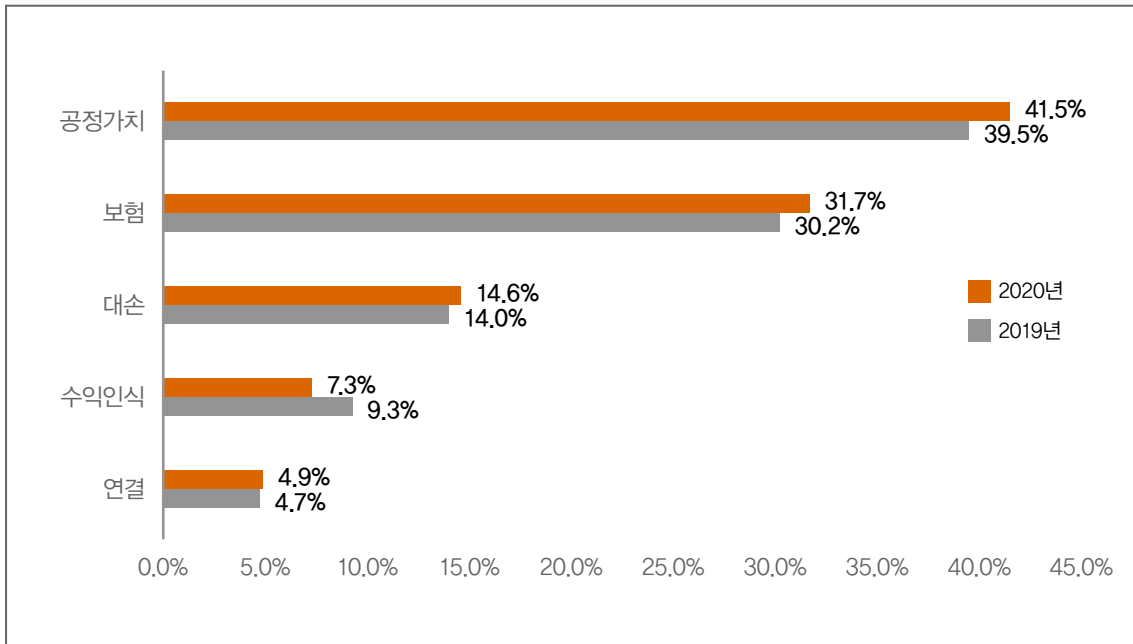


4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비금융업(129개사)과 금융업(41개사)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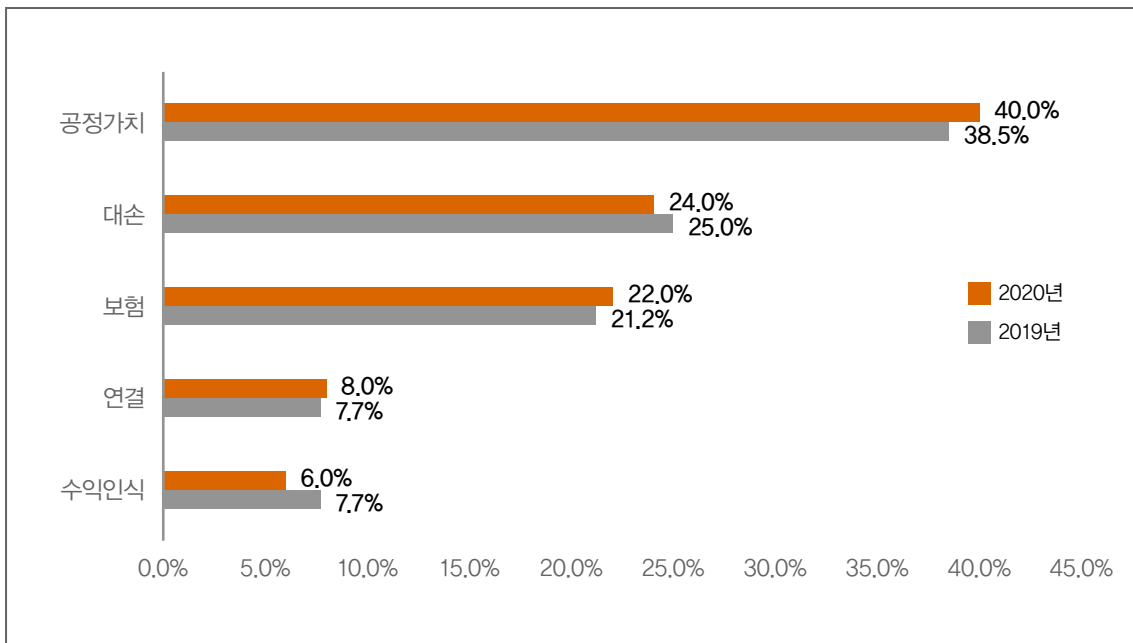
2조원 이상 (금융업)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의 핵심감사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정가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9년과 유사하다.

[별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유형 분포 (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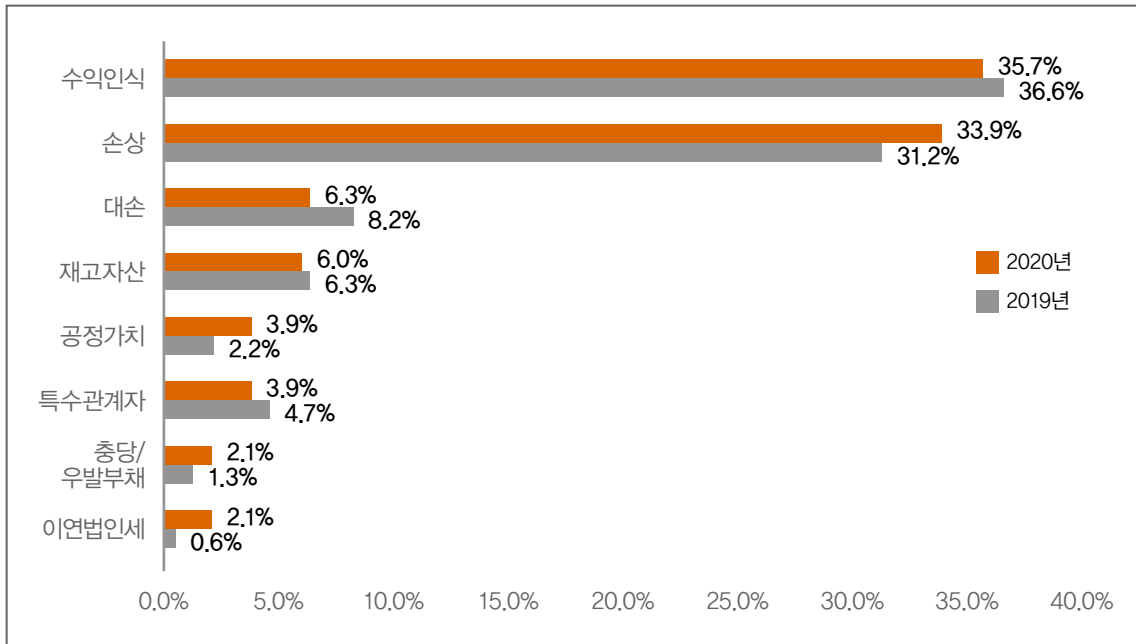
[연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유형 분포 (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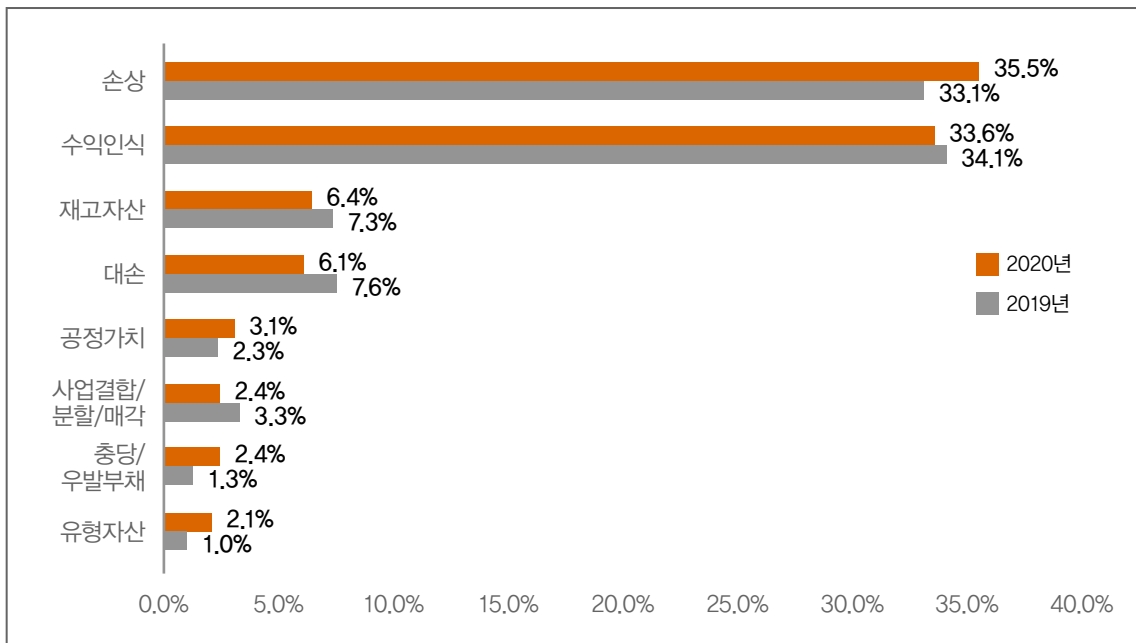
5천억 이상 2조원 미만 (전체)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핵심감사사항은 2019년과 동일하게 수익인식이 가장 많은 유형이었으나 상대적 비중이 줄고 두번째로 많은 유형인 자산손상의 비중이 늘었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자산손상 항목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별도]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유형 분포



[연결]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유형 분포





Audit Analytics가 국제감사기준(SA)을 적용하는 전세계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핵심감사사항 유형은 자산손상과 수익인식이 가장 많았다. 한편, 금융업과 제조업을 비교한 내용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자산손상과 수익인식이, 금융업이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포함한 가치평가와 수익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업종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핵심감사사항 유형	비율	금융, 보험 등	제조
자산손상	24.2%	22.0%	59.5%
수익인식	17.2%	26.9%	34.5%
가치평가	10.1%	57.4%	2.8%
계속기업가정	6.5%	9.9%	9.8%
법인세	4.5%	5.3%	15.2%
재고자산	4.3%	1.9%	15.2%
사업결합	3.7%	4.4%	8.1%
종속기업등	3.2%	4.4%	5.5%
우발부채	3.1%	5.8%	7.0%
회계정책변경	2.4%	0.6%	7.4%

출처: Audit Analytics, An Overview of KAMs – 2019, 2020.8.19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위원회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제이다. 효과적인 재무보고 감독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감독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대부분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취약점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에서, 감사위원회가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 중과실로 분류되어 제재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법적인 의무 측면에서도 핵심감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dit Committee Library

Audit Committee Library는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 있는 주제별 정보를 모아 놓은 온라인 자료실입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Audit Committee Library 이용 방법

- 1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홈페이지(acc.samil.com)에서
- 2 'Audit Committee Library' 섹션으로 내려가신 후
- 3 'Find out more'를 클릭하면 주제별로 정리된 다양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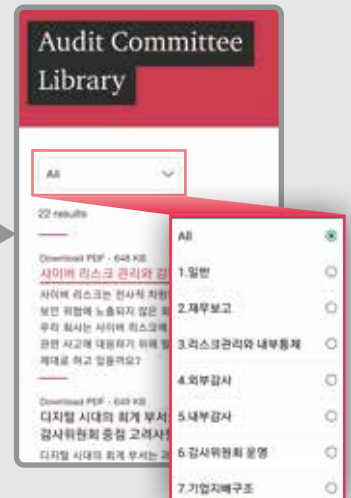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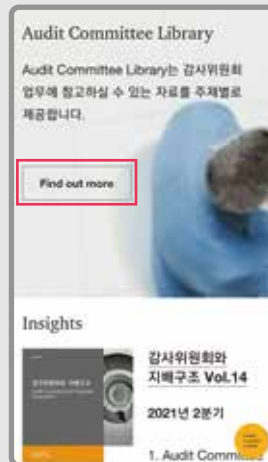
* PC와 동일하게 모바일로도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PC



Mobile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이 용 재 파트너

02 709 0423

yong-jae.lee@pwc.com

김 재 윤 파트너

02 3781 3423

jae-yoon.kim@pwc.com

하 미 혜 연구위원

02 709 8599

mihye.ha@pwc.com

acc.samil.com

S/N: 2108A-RP-013

© 2021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